



2015 – 2016

학부모 학생 안내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는 2015-2016
학년도를 맞이하여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께: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환영의 말을 전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이를 소중한 특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행정관;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학습지도를 하는 교사; 원활한 학교 운영을 도와주는 직원, 우리 모두는 부모님과 함께 협력하여 모든 아동이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년마다 학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학과 커리어를 준비한 상태로 고교를 졸업하는 과제를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의하면, 우리의 일반 고등학교들은 82 퍼센트의 졸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높은 치수이며 -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큰 성과입니다. 일상에서 우리 학교들은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최근의 성과를 출발로, 100 퍼센트 졸업이라는 목표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더 요구될 것입니다.

이번 학년도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새로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역으로 나누어 학교를 관리하는 교육 서비스 센터는 여섯 곳으로 확대됩니다. 근접한 장소에서 모든 학교가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학생, 부모, 보호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목표들 중 하나는 이런 센터들을 부모와 보호자들 가까이 옮겨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각 센터마다 학부모 및 커뮤니티 참여 센터를 갖추어 학부모, 보호자 그리고 학교 사이의 팀워크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런 센터를 통해 학교는 환영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며, 그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학생 성취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요소들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에서 테크놀로지는 학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 도구는 대단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개별적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또는 태블릿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준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릴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 및 행정관으로 구성된 팀이 전임 교육감보인 **Dr. Judy Burton** 씨를 수장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미션 과제: 교실에서 컴퓨터 이용을 목표로 교육구 플랜을 면밀히 구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내에,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의 컴퓨터 도구 사용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전에 각 학생과 교사에게 컴퓨터 도구와 함께 학교를 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결의안으로 학교 수리 자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본인의 리더쉽 하에, 이런 관행은 중단되었습니다. 교육구는 재정적으로 구입 가능한 컴퓨터 도구를 구입할 것이며 동시에, 수리비는 원래 의도된 용도로 지출될 것입니다. 학교 관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구 직원들은 매일 1,000 여개의 학교로부터 들어오는 1,200건의 수리 요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학교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높은 학업 성취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교사들, 최고 정예 교육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교를 졸업한 후 우리 학생이 성공하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구가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해 전력투구를 하면서, 동시에 부모와 보호자들과 한 팀이 되어 우리는 100 퍼센트 졸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런 무거운 책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수행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amon C. Cortines

총 교육감

해당 부서

교육 위원회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6389
팩스 번호. (213) 241-8953
교육위원 무료 연락번호
1 (877) 772-6273



DR. GEORGE J. MCKENNA, III – 제 1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No. (213) 241 – 6382 팩스 번호. (213) 241 – 8441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5351 West Adams Blvd, Los Angeles, CA 90016
전화번호 (323) 939 – 6315 팩스번호 (323) 939 – 7615
이메일: george.mckenna@lausd.net



MONICA GARCIA – 제 2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180 팩스번호 (213) 241 – 8459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monica.garcia@lausd.net



SCOTT SCHMERLSON – 제 3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386 팩스번호 (213) 241 – 8979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현장 사무실: 6651 #A Balboa Blvd., Lake Balboa, CA 91406
전화번호 (818) 654 – 3785 팩스번호 (818) 654 – 3788
이메일: scott.schmerlson@lausd.net



STEVE ZIMMER – 제 4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387 팩스번호 (213) 241 – 8453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steve.zimmer@lausd.net



DR. REF RODRIGUEZ – 제 5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5555 팩스번호 (213) 241 – 8467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ref.rodriguez@lausd.net



MÓNICA RATLIFF – 제 6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388 팩스번호 (213) 241 – 8451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monica.ratliff@lausd.net



DR. RICHARD VLADOVIC – 제 7 교육위 지역
전화번호 (213) 241 – 6385 팩스번호 (213) 241 – 8452
사무실: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richard.vladovic@lausd.net

해당 부서

Ramon C. Cortines

총 교육감

333 South Beaudry Avenue, 24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 241-7000

팩스 번호. (213) 241-8442

이메일: superintendent@lausd.net

소교육구 사무실

북동 소교육구

8401 Arleta Avenue
Sun Valley, CA 91352
(818) 252-5400

북서 소교육구

6621 Balboa Boulevard
Lake Balboa, CA 91406
(818) 654-3600

서부 소교육구

11380 West Graham Place
Los Angeles, CA 90064
(310) 914-2100

동부 소교육구

2151 North Soto Street
Los Angeles, CA 90032
(323) 224-3100

남부 소교육구

1208 Magnolia Avenue
Gardena, CA 90247
(310) 354-3400

중앙 소교육구

333 S. Beaudry Ave., 11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213) 241-0100

주요 부서

성인 및 커리어 교육	(213) 241-3150	매그넷 프로그램	(877) 462-4798
비온더 벨 (Beyond the Bell)	(213) 241-7900	관리 및 운영	(213) 241-0352
교육위원 비서 부	(213) 241-7002	커뮤니케이션 및 언론 관	(213) 241-6766
예산 서비스	(213) 241-2100	독립 사정관 부서	(213) 241-6036
데이터 책무 부서	(213) 241-2460	총 조사관 부서	(213) 241-7700
교육구 양호 서비스	(213) 202-7580	최고 회계 책임자 부	(213) 241-7888
학습지도 부서	(213) 241-5333	교육 서비스 부	(213) 241-4133
특수 교육 부서	(213) 241-6701	환경적 건강 및 안전 부서	(213) 241-3199
조기 교육 부서	(213) 241-0415	총 카운슬 부서	(213) 241-6601
교육 형평성 준수 부서	(213) 241-7682	학교 운영 부서	(213) 241-5337
비상사태 서비스	(213) 241-3889	학부모, 커뮤니티, 학생 서비스	(213) 481-3350
동등한 기회 담당부	(213) 241-7685	인사부	(213) 241-7800
시설물 서비스	(213) 241-4811	공립 학교 초이스 정보	(213) 241-2547
급식 서비스	(213) 241-3366	학교 운영부	(213) 241-5337
인적 자원	(213) 241-6131	학교 경찰국	(213) 625-6631
정보 테크놀로지 부서	(213) 241-4906	학교 성적 보고서	(213) 241-5600
학교 대항 운동경기 부서	(213) 241-5847	학생 건강 및 인적 서비스	(213) 241-3840
KLCS 채널 58	(213) 241-4000	통학버스 부서	(800) 522-8737
LAUSD 안내 지원부	(213) 241-1000		

목차

주제	페이지
출결석	1
▪ 결석-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됨	1
▪ 결석 -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
▪ 종교적 사유로 결석	2
▪ 무단 결석 (Not) 통지서	2
▪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2
▪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면제 프로그램	2
▪ 무단 결석	2
알콜, 담배, 약물 및 폭력 - 예방 및 금지	3
방부 처리한 유기체 및 생체를 과학 수업에 이용하는 대안책	3
연례 체육 교육 조건 통지서	3
석면 관리 계획	3
수업 시작 전 및 방과후 프로그램	3
블랙보드 커넥트 통지 시스템	4
왕따 및 신고식 괴롭힘 방침	4
캘리포니아 학생 성취도 및 진전도 학력고사 (CAASPP)	5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개발 시험 (CELDT)	5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 시험 (CAHSEE)	5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	5
휴대폰	6
학생 기록에 대한 이의 제기	6
▪ 고소건	6
거주지/비상시 연락정보 변경	6
아동 학대	7
학생과의 행동 규범	7
조정된 안전 및 건강 학교 평가 및 관행	7
Core 면제 우선권 상급학교 진학 초이스 프로그램(PSMCP)	7
훈육 기초 방침	7
복장 규정/교복	8
교육 옵션 학교	8
비상시 대처 - LAUSD	8
▪ 부모는 비상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8
비상시 대응책	9
급식 서비스 부서 (Café LA)	9
▪ 교실에서 아침 급식	9
▪ 급식 신청서	9
▪ 학생 급식 가격	10
▪ 영양 및 카페 엘레이 메뉴	10
외국 학생 입학	10
포스터케어 - 아동 및 가정국 (DCFS) 또는 보호감찰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은 학생	10
정치적 행동, 집회, 군중, 데모 및 워크아웃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11
성적 변경 요청 절차	11
총기없는 안전한 학교	11

건강 정보.....	11
▪ 천식 프로그램	11
▪ 전염병 예방	12
▪ 학교에서 처방약 투약	12
▪ 구강 건강 정보	13
▪ 건강 신체 검진	13
▪ 학교 정신 건강 서비스.....	13
▪ 제 2 형 당뇨 정보	13
고교 졸업 필수조건	13
▪ 카운슬링 요소	14
무숙자 홈리스 학생	14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	15
종합 해충 관리 프로그램.....	15
인터넷 사용	16
학교 대항 운동 경기	16
미성년자 감옥/캠프 수감 후 재입학.....	16
학생 기록 보관 장소.....	17
언론 공개	17
차별 금지 성명서.....	17
패밀리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 (FERPA)통지서.....	18
양호사-패밀리 파트너십	19
기회 전학.....	19
콘돔 제공 프로그램 관련 학부모/보호자 연례 통지서.....	19
학부모, 커뮤니티, 학생 서비스-학부모 참여	19
학부모 참여 방침	20
학부모의 권리.....	20
부모의 알 권리	21
▪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 (SVP)	21
등록허가증 및 학생 전학.....	21
▪ CA 개방 등록법	21
▪ 타교육구로의 등록허가 및 전학.....	21
▪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 및 전학	22
체력 검사.....	22
배상/부모의 배상 책임.....	22
학생 책무 보고서	22
학교-중심 메디칼 서비스.....	22
학교 경험 설문조사.....	23
거주지 학교	23
학교 스케줄	23
캘리포니아 종합 성 건강 및HIV /에이즈 교육법에 준한 성교육 과목	23
성희롱 방침	25
특수 교육: 고소 처리 부서 (CRU)	26
학생 사고 보험.....	26
학생 출석 옵션.....	26
학생 건강 보험	26
학생/학교 품행 규정	26
학생 수색	27

학생의 개인 소지품	28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28
섹션 504 하의 장애 학생	28
임시 장애 학생.....	28
보충 교육 서비스	28
정학 및 퇴학.....	29
▪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항소.....	30
▪ 퇴학 후 재활 및 복원.....	30
타이틀IX 및 학생	31
교통편 – 통학버스	31
▪ 통학버스 승차시 행동 규범	31
균일 고소 절차 (UCP)	31
학교 캠퍼스 방문인	33
윌리엄/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33

출석

캘리포니아 풀-타임 의무 교육법

교육법 제 48200에 의하면, 제 3장 하에(제 48400부터 시작) 면제된 6세에서 18세 사이의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은 풀타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된다. 풀타임 의무 교육 대상자 그리고 제 2장 또는 제 3장에(제 48400부터 시작) 의해 면제되지 않은 의무 컨티뉴에이션 교육 대상자는 정규 공립학교 또는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클래스에 해당 교육구 운영 위원회에 정한 학교 시간 동안 출석하며 그리고 부모나 보호자가 위치한 거주지에 사는 기간동안 해당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 또는 기타 사람은 학생을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 해당 교육구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 전체 학교 시간동안 정규 공립학교나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클래스에 출석시킨다.

로스앤젤레스 시 조례 제 13.57항: 미성년자 대상 낮시간 제약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의무 교육 또는 의무 컨티뉴에이션 교육 대상자가 학교 시간에, 해당 미성년자가 정상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시간에, 학교가 방학 중인 아닌 운영 중일 때에, 홀로 또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공 도로, 고속도로, 길, 골목, 공원, 놀이터, 또는 기타 공공 운동장, 공공 장소, 공공 건물, 장소, 유원지 그리고 음식점, 공터 또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지역에 있는 것은 불법이다. 이 조항에는 학교 부지에 인접한 지역의 공공 인도, 학교 출입 지역 또는 학교 운동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차터 13.57항- 미성년자 대상 낮시간 제약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의무 교육 또는 의무 컨티뉴에이션 교육 대상자가 “학교에 결석한 상태에서 공공 장소에서 발견”되는 것은 불법이며 단지, 해당 미성년자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13.57.020항을 참고하십시오). 이 조항의 취지 상,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는 “학교에 결석한 상태에서 공공 장소에서 발견된” 것이며 즉 해당 미성년자가 학교에 있을 동일한 날짜에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공공 도로, 길, 고속도로, 차랑길, 연석 주변, 골목, 운동장, 놀이터, 또는 기타 공공 운동장, 공공 지역 또는 공공 건물, 유원지 또는 음식점, 공터 또는 감독인이 없는 지역, 또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어슬렁거리거나, 이리 저리 배회하거나, 천천히 걷거나, 놀거나, 목적지 없이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년에, LAUSD 학생 서비스 부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및 로스앤젤레스 시 경제 및 취업 개발 부서는 낮시간에 학생 통행 금지 법을 위반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결성했다. 로스앤젤레스 시 경찰이 학교 교정 밖에서 LAUSD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 학생에게 위반장을 발부하는 대신, 무단결석 의뢰서를 발부하여, 그 학생이 학생 서비스 (PSA) 및 출결석 카운슬러와 로스앤젤레스 시 전역에 위치한 관할 유스소스에서 심의회의를 가지도록 요구할 것이다. PSA 카운슬러는 해당 학생과 부모를 만나서 교육 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학업, 출결석 및 행동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여, 거주지 학교와 인근 지역의 해당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것이다. 더불어, PSA 카운슬러는 거주지 학교의 교직원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한다.

타당한 결석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은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교육법 EC 48200) 자녀가 “부모가 허용한 무단결석”을 이용하여 결석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런 무단 결석은 법이 허용하지 않은 결석 사유들이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면 잘 알 수 있다.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가족을 위한 심부름
- 동생들 돌보기
- 휴가 또는 여행
- 나쁜 날씨
- 교통편 문제

학교 출석은 학생의 학력 성취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출석률이 양호한 학생은 학업과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학교는 현재 학년도 동안 출석 데이터와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당 학년도가 종료된 이후에, 출석 데이터와 기록을 정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석한 다음 학교에 다시 온 후 (10)일 이내에, 결석 사유서를 제공하여 자녀가 무단 결석으로 넘겨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부모/보호자의 책임이다. 부모/보호자들로부터 학생의 결석사유를 알게되는 즉시, 다음의 교직원들은 결석사유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제 5, 421 항):

- 학교 양호사 또는 공공 보건국 간호사
- 출결석 담당 수퍼바이저(예: 카운슬러)
- 의사
- 교장
- 교사
- 이런 검증을 하도록 배정된 교육구의 기타 유자격 직원

결석사유 검증을 위임받은 학교-현장 교직원은, 결석사유의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사실이 제시될 경우, 결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해당 결석사유를 거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 306항).

결석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정당한 결석사유: 캘리포니아 E.C. 48205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정당한 결석사유로 인정된다:

- 몸이 아픈 경우
- 격리
- 의료, 치과, 안과 또는 척추 의료 서비스
- 직계 가족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또는 학생의 직계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친척(캘리포니아 주 1일, 타주 3일)
- 배심원 의무
- 학생 자신이 양육 부모이며, 자신의 자녀의 질병 또는 의료 치료가 요함
- 합당한 개별적 사유는부모가 결석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교장 또는 담당인이 승인을 한 경우이다. 이런 영역에 속한 결석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전투 지역에 파견된 현역 병역 의무 (직계 가족; 최고 3일 허용)
 - 법정 출두
 - 장례식 참석 (연장된 일수)
 - 종교적 피정 참석 (한 학기당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 연예 업체 (해당 학년도 동안 연속하여 5일을 초과하지 못하거나 최대 5일 결석 허용)
- 의료적 제외 또는 면제
- 종교 및 문화적 명절 및 의식 또는 세속적인 역사 기념일
- 종교 교육 (최소 학교일 1 개월마다 4일을 초과 못함)
- 향소 절차를 통한 기간된 정학처분
-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예술 단체에 참여 (해당 학년도 동안 최고 5회)
- 미리 예약이 된 정신 건강 서비스(정신 건강 데이 치료)
- 아들 딸의 부모 직장 경험의 날^㉔

위에 언급된 사유들 중 하나에 해당되어 결석이 발생한 적절한 사유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 학교는 그 결석을 정당한 결석으로 고려할 것이다. 위에 언급된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는 학생은 결석동안 미완성한 과제 및 숙제의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주어진 경우 완성하도록 허용되며, 만족스럽게 완성한 경우, 정상시와 동일하게 학점이 수여된다. 결석한 수업의 담당 교사가 과제의 내용과 해당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한다. 테스트 및 과제는 결석 기간동안 하지 못한 테스트 및 과제와 적당하게 상응하는 내용이지만, 동일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결석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위에 명시된 정당한 결석사유로 인한 결석 이외의 결석은 근거 없는 결석으로 간주된다. 법에 준하여, 교육구는 모든 결석에 대해 왜 결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서면 또는 구두로 정당성을 설명)을 십 (10)일 이내에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무단 결석생(무단 결석생 부분을 참고하시오)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리고 SARB 의뢰 그리고 시 또는 교육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를 당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무단 결석 통지서

6세부터 18세 미만의 학생이 합당한 결석사유를 제공하지 않고, 해당 학년도 동안 결석, 조퇴 그리고/또는 30분 이상 지각을 3 회 이상 한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자동적으로 무단결석 통지서가 우송될 것이다.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결석은 무단결석으로 분류되어 계산된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런 서신이 작성하게된 학교로 연락하도록 한다. 결석과 관련하여 정정하거나 업데이트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정정은 해당 학년도가 종료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부모나 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제시하면, 해당 학생은 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결석할 수 있다 [교육법 제 46014]또한, . 종교적 피정에 참석하기 위해 결석할 수 있지만 매학기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교육법 제 48205 (a)(7)]. 위의 사항은 정당한 결석으로 간주되며 그런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미완성 공부를 보충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면제 프로그램

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서를 수반한 경우,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도덕 및 종교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결석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위원회 규정 2125항 그리고 교육법 제 46014조에 의거한 것이다:

- 해당 학교는 종교적 사유로 인한 결석 면제 (Religious Released-Time)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학교일 일주일 동안 40분 미만으로 허용된다.
- 어떤 학생에게도 학교일 1개월마다 4일을 초과하는 이런 목적을 위한 결석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각 학생은 적어도 각학년에 준한 최소 학교일만큼 학교에 다닌다.
- 당일 면제 시간은 교장에 의해 결정되며, 매주 같은 시간에 동일한 교실에서 실시된다. 이것은 수업이 자주 중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무단 결석

의무 교육을 풀타임으로 받아야 하는 학생 또는 연속 의무 교육의 대상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년도동안 3일을 전체 결석하였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한 학년도에 30분 이상의 지각 또는 결석을 3번 한 경우, 또는 위의 내용을 어떤식으로도 합한 경우, 해당인은 무단 결석이 되며 출석 담당인 또는 교육구 교육감에게 보고될 것이다 [교육법 48260 (a)]. 자녀가 무단결석생으로 처음 분류된 경우, 교육구는 그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우편 혹은 기타 합당한 방법으로 무단 결석 통지서를 통해 다음을 통지한다[교육법 48260.5]:

- 학생이 무단결석생이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을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가 있다.
- 이런 의무를 불이행한 부모나 보호자는 위반사항에 대해 유죄이며 기소될 수 있다.
- 대안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교육구에서 제공될 수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의 무단 결석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교직원과 만날 권리가 있다.
- 해당 학생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당 학생은 운전 특권의 중지, 제한, 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학교에 와서 하루 동안 학생과 함께 수업을 참관할 것을 권고받는다.

해당 학년도 동안 무단결석으로 3 회 이상 보고되었고 그리고 담당 교육구 직원 또는 교직원이 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학생과 적어도 1회의 컨퍼런스를 실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후에도, 결석한 경우 상습적 무단 결석생(habitual truant)으로 간주된다[교육법 48262].

상습적 무단 결석생으로 간주되거나 정기적으로 학교를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 시 상습적으로 비복종 또는 무질서한 행위를 하는 학생은 학교 출결석 심의 위원회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SARB)에 회부될 수 있다. SARB 담당인은 부모/보호자에게 SARB 청문회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해당 통지서에는 해당 학생과 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출결석 심의위에 와서 면담을 받도록 요구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법 48263].

부모, 보호자 기타 사람이 학교 출결석 심의위의 지시 또는 제공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출결석 심의위는 교육구에 이를 신고하여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형법 고소장을 해당 법정에 접수시키고, 이런 기소 사항이 해당 기관에 의해 공소되는 것을 점검한다[교육법 48263.5].

교육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정청과 로스앤젤레스 시 검정청과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무단 결석생의 부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알콜, 담배, 약물 및 폭력-예방 및 금지

약물, 알콜, 담배 및 기타 독성물 관련 법규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책 및 규정 절차의 제목으로 발부된 방침 공문 문서 번호 3277.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교 교정이나 학교 후원 행사에 학생이 약물, 술, 담배를 사용, 소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학교 행정관은 교정 및 학교 행사에서 약물, 술, 담배의 사용, 소지 또는 판매를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학교 경찰 및 커뮤니티 기관과의 공조 하에, 학교 행정관은 약물, 술, 담배, 폭력 없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직접 중재, 퇴학 또는 체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케이스별로 처리된다.

흡연 및 모든 담배 제품, 알콜이나 약물 사용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전체 부지에서 금지되며, 이에는 교육구 소유 또는 임대 건물과 교육구 차량도 포함되며, 직원, 학생 및 학교나 교육구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은 항상 이를 금지당하며, 교육구 후원 행사 참여에서도 금지된다.

더불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 (ENDS) 사용을 금지하며, 전자담배, 후카펜, 시가리코스 및 기타 기체 방출 도구가 금지되며, 니코틴이 함유 및 비함유에 상관없이 금지되며, 담배 제품 사용을 모방하는 것도 모든 교육구 부지와 교육구 차량에서 항상 금지된다. ENDS는 담배, 시가 및 파이프 모양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펜, 천식흡입기와 식음료 용기와 같은 일상품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도구들은 기체 니코틴에 제약되지 않으며; 마리화나,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여러 약물을 기체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보건 및 안전 법규 제 119405 항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즉 학생에게 전자담배 판매는 금지되며 따라서 학생은 이런 도구를 소지해서는 안된다. ENDS를 사용, 소지, 또는 권유, 판매를 주선하거나 협상하는 것은 정학 또는 퇴학과 같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ENDS는 교육법 제48900항 및 부조항 그리고 보건 및 안전 법규 제11014.5 항의 정의에 의하면 마약 부속 도구로 간주된다.

부모와 학생들은 해당 학교에서 도움을 구할 것을 권한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학교 또는 소교육구 학생 보건 및 인문 서비스 전문인에게 연락하십시오.

채택된 그리고 요구되는 증거-중심 예방-교육 교과과정은 2001년 NCLB법 조건 및 타이틀 IV, 안전 및 마약 없는 학교와 커뮤니티 법에 의한 채택된 그리고 요구되는 증거-중심 교과과정을 충족을 위한 공문번호3403.1으로 학교에 제공되었다. 학교 차원의 시행을 위해 초등학교는 REF-3398.1으로; 중학교는 REF-3404.1; 그리고 고교는 REF-3405.1으로 설명되었다.

방부 처리한 유기체 및 생체를 사용하는 과학 실험의 대안

교육구 방침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2255.1조에 의거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실험 수업을 도덕적 사유로 인하여 거부하는 학생에게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거나, 대체 수업 활동이 제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동물이 이용될 과학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학생은 대체적인 수업에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모의 내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배정된 수업은 과학 수업과 상응하는 시간과 노력을 학생에게 요구되는 것이어야 한다.

체육 교육 필수조건 연례 통지서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1210(g) 항에 의거하여, 1 학년부터 6 학년의 초등생들은 10일의 학교일마다 총 200 시간 이상의 체육 수업을 받아야 하며, 이에는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초등교 교사들은 각자의 체육 수업 일정을 학교 웹사이트나 초등교 담당 학급에 게시해야 한다. 더불어, 체육 수업 일정은 그 학교의 사무실에도 붙여 놓는다. 체육 수업 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자녀의 교사 또는 교장에게 먼저 연락하도록 한다.

체육 교육 이의 제기 고소장. 자녀가 법으로 정해진 체육 교육 수업 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고소장 서식서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구 체육 교육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Page/1240>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메인오피스에 가서 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체육 수업에서 요구되는 총 시간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학교로부터 받은 답변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로컬 교육 서비스 센터의 학교 학습지도 디렉터에게 연락할 수 있다.

석면 관리 계획

교육구에 속한 각 학교에는 석면 관리 계획서(AHERA 보고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가 해당 학교와 그 주변 지역의 상태에 어디에 존재해 있는지를 알려준다. 학교는 석면 제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직원, 학부모 및 법적 보호인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AHERA 보고서는 6 개월마다 한 차례씩 최근의 정보로 교체되고, 요청시 검토용으로 제공된다.

수업 시작 전 및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구 산하 단체인 비온드 더 벨(Beyond the Bell-BTB) 부서는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연장 학습 기회(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 보충 교육 서비스(Supplemental Educational Services) 그리고 학생 보조 서비스(Student Auxiliary Services)를 담당하고 있다. 아래에 간략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추가 정보는 (213) 241-7900으로 전화하거나, BTB 웹사이트를 www.btb.lausd.net 검색 또는, BTB 사무실 주소 333 South Beaudry Ave., 29th Floor, Los Angeles, CA 90017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수업 시작 전, 방과후 프로그램 - 로스앤젤레스 전역에 있는 커뮤니티 단체와의 파트너십 하에 BTB는 훈련받은 직원의 감독하에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업 지원, 심화 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제공한다.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BTB는 튜터링, 멘토링, 시가 및 공연 예술 및 여러 체험 기회도 선정된 학교에 제공한다.
- 연장 학습 기회 - 각 학교는 학년별 학습기준에 미달되는 학생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교생들에게 학교 수업일 그리고/또는 수업이 없는 날에 보충 수업을 제공한다. BTB는 학습기준에 미달될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주자 교육 프로그램(Migrant Education Program), 자금이 있을 경우 고교 학점 재취득 썬머 스쿨 프로그램, CORE 면제 프로그램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연장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 보충 교육 서비스 - 2013년 8월 7일, 미 문교부는 LAUSD와 기타 CORE 교육구들을 대상으로 낙오자 없는 교육법으로부터 면제권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LAUSD는 보충 교육 서비스(SES)를 2013-14 그리고 2014-15 학년도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2014-15년 이후에도 면제권이 연장될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면제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총교육감 웹사이트의 **CORE코너** 웹페이지에 받아볼 수 있다.
- 학생 보조 서비스(Student Auxiliary Services) - BTB 학생 보조 서비스는 안전하고, 친인적이며 잘 감독된 활동을 제공하며, 이는 교육을 교실 밖으로 그리고 정규 학교 시간 이후로까지 연장시킨다. 여러 서비스에는 학생, 학교, 교직원 및 커뮤니티를 위한 보조 서비스뿐 아니라 필수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포함된다. 방과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심화 및 스포츠 프로그램인 유스 서비스(YS)가 이런 프로그램에 해당되며, 이 프로그램은 학교 시간 이후부터 오후 6시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제공된다; 클리어 클릭 및 포인트 퍼민 야외 교육 센터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 주 과학 학습기준을 지원하고 인간 관계 활동을 접목시킨 야외 및 환경 교육 프로그램; 레디-셋-고우,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유스 서비스 플러스, 시정부 센터 퍼밋 프로그램 및 고용인 레크리에이션 유니트 등.

블랙보드 커넥트 통지 시스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블랙보드 커넥트라고 불리는 교육구 전역 통지 시스템을 통해 비상 상태, 출결식, 학교 행사 및 귀하와 귀하 자녀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부모 및 교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블랙보드 커넥트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 음성 메시지를 귀하의 가정, 직장 또는 휴대폰으로 보내고 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와 소셜네트웍을 통해 귀하게 연락할 수 있다. 블랙보드 커넥트를 통해 교육구 소속 모든 사람에게 몇분내에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며 이로서 학교와 학부모 및 교직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귀하의 현재 연락 정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 통지, 출결식 및 비상시 통신을 어떤 전화번호로 전달받기를 원하는지를 학생 이머전시 정보서에 명시할 수 있다.

블랙보드 커넥트 정보를 받기 위해 어떤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

학교가 귀하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 **일반 통지**는 초저녁에 보내지며, 이런 일반 통지는 비-긴급성으로서 앞으로 있을 행사나 공고 내용들이다.
- **결석 통지**는 대개의 경우, 아침 시간 그리고 초저녁 시간에 보내진다. 이런 메시지는 자녀가 한 교시 이상 또는 하루 전체를 결석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 보내진다. 가장 적절한 번호는 낮 시간동안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이다.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들은 직장 전화번호나 휴대폰 전화번호가 이에 해당된다. 낮시간에 집에 있는 부모인 경우, 집 전화번호가 해당된다. 낮시간 동안에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결석을 통지하는 연락번호로 집 전화번호를 추천하지 않는다.
- **비상 상황** 통지 메시지는 긴급을 요하는 내용이며,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보내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부모가 제공해야 하는 전화번호는 취침 이외 시간에 가장 잘 연락될 수 있는 번호이어야 한다. 블랙보드 커넥트는 일반 및 결석 통지를 포함한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로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번호는 이머전시 카드에 적힌 대체 연락번호가 아니라 부모나 보호자의 전화번호여야 한다. 학교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이머전시 카드에 있는 정보를 사용할 것이다.
- **교사 메시지**는 자녀의 현재 학습 수준, 품행 및 학습 습관 그리고 학급 관련 공지 및 통지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보내진다.

중요한 전화 내용을 잘 전달받기 위해 필요한 조언:

1. 학교(또는 교육구)가 전화 연락을 취할 때,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콜러 ID에는 학교(또는 교육구) 명칭 또는 전화번호가 뜰 것이다.
2.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 주변 잡음은 이 시스템을 “중지 및 시작”을 초래시킬 수 있다. 블랙보드 커넥트는 사람이나 자동응답기/음성 메시지에 연락이 닿았는지 그리고, 주변 잡음이 메시지 전달에 지장을 주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매우 세밀히 접속되어 있다. 가급적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받거나, 귀하 전화기에 “mute” 버튼을 누르시오.
3. 메시지의 일부를 놓쳤을 경우,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기의 “*” (스타) 키를 누르면 전체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877) 737-5291 로 전화하여 최근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다.
4. 블랙보드 커넥트 서비스는 교환번호로는 연락이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곧 이용 가능할 것임), 직접 연결되는 번호여야함을 유념하시오.

완전히 작성된 학생 이머전시 정보서를 가급적 신속히 자녀편으로 보내도록 한다. 연락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고칠 필요가 있다면 학교로 직접 연락하도록 한다. 해당 학교만이 이런 귀하의 연락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학교가 귀하의 현 연락번호를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귀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 통지 시스템은 비상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본 교육구는 학생, 부모 그리고 직원들에게 선택할 수 없는 필수 방침으로 설정했다. 모든 개인 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유지될 것이며, 본 교육구의 시큐리티 방침을 준수할 것이다.

왕따 및 신고식 유형의 괴롭힘 금지 방침

LAUSD는 안전한 직장 및 학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전심전력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에 저축이 되거나 배움과 교육을 방해하는 왕따 행위, 신고식 타입의 괴롭힘 또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입장을 취한다. 교육구는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 또는 조사 과정에 개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를 엄격히 금하며, 이 방침은 교육구 관할권에 소속된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LAUSD 왕따 및 헤이징 방침은 연방법, 주법 및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에 의거하여 모든 학교 및 교직원은 상호 존중, 용납 및 수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립학교에 속하는 모든 프라이머리,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은 안전, 안정, 평온한 교정에서 근무하고 공부할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 1조, 28(c)항)

본 방침은 학생, 교육구 직원 및 관련 성인 사이에 발생한 행동들이 포함된다. 본 방침은 학교 교정 내, 학교 및 교육구-관련 활동 및 행사 장소, 등하교 그리고 교육구 관할권 소속 구역에 적용된다(교육법 48900(s)).

왕따는 (bullying) 의도적이며 상대방이 원치않는 심각하거나 침체적인 신체, 언어 또는 전자상의 행위로서, 다음들 중 하나의 효과를 취득할 의도로 또는 그런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
- 신체 또는 정신 건강에 파괴적인 효과가 상당한 경우
- 학업 성취를 상당히 방해하는 경우
- 학교 서비스, 활동, 특권에 참여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상당한 방해를 주는 경우

사이버 왕따 행위는 전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왕따 가해 행위이다(예: 문자, 이메일, 블로그, 포스팅). 학교에서 또는 학교-관련 활동 및 행사시 사이버 왕따 행위에 개입한 학생은 징계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행위가 개인 전자 도구를 통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교정 밖에서 발생했지만 학교의 안전이나 학업 환경을 저해하는 커뮤니케이션 경우에도 교육구 관할권 하에 적용될 수 있다.

신고식형 괴롭힘(Hazing)은 학생 단체나 학생회 회원되거나 회원 희망자들에게 신고식 또는 신고식 유형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단체가 교육 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인정된 단체이거나 인정되지 않은 단체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학부모와 학생은 해당 학교의 현장 행정관 또는 교육 서비스 센터에 문서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할 것을 권한다. 학부모/보호자 또는 학생 문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간 관계, 다양성 및 형평성 부서에 213-241-5337로 연락하도록 한다. 차별/괴롭힘 혐의에 대한 문의는 교육적 형평성 부서에 (213) 241-7682로 연락한다.

캘리포니아 학생 성취도 및 진전도 학력고사 (CAASPP)

캘리포니아는 새로운 학력고사로 이미 전환했고, 그 명칭은 캘리포니아 학생 성취도 및 진전도 학력고사 (CAASPP)이다. 2015-16학년도에의 경우, 학력고사는 다음의 학력 평가를 포함했다:

- 스마트 발란스드 종합 수학 및 영어 학력고사: 3학년부터 8학년 그리고 11학년생 대상.
- 캘리포니아 학습기준 학력고사 (CST): 5학년, 8학년과 10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시험.
- 캘리포니아 수정된 학력평가 (CMA): 5학년, 8학년과 10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 시험.
- 캘리포니아 성취도 대안 학력평가 (CAPA): 5학년, 8학년과 10학년생을 위한 과학시험유자격.
- 캘리포니아 대안 학력평가 (CAA): 유자격CAPA 3학년부터11 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언어 과목.

교육구가 공동 필수 주 학습기준 및 스마트 발란스드 학력평가로 옮겨가면서 앞으로는 주 학력고사 프로그램에 변화가 더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2015-16 학력고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학생 테스트 및 학력평가 부서에(213) 241-4104로 연락하십시오.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개발 시험(CALIFORNIA ENGLISH LANGUAGE DEVELOPMENT TEST -CELDT)

주 법규에 의하면, 교육구는 영어 학습생 (ELs-English Learners)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신입생의 영어 언어 개발도를 평가해야 하며, 이는 이런 학생의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영어 능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CELDT는 모국어가 비영어권인 교육구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져야만 하고, 다만 다른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이 시험을 이미 치른 경우는 예외이다. 재배치된 영어 학습생을 제외한 식별된 영어 학습생들은 매년 CELDT 시험을 치러서 일년동안 영어 언어 개발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평가받는다.

해당 학교의 학사 일정에 준하여, 가을 학기 중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영어 학습생으로 이미 식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CELDT는 실시된다. 모국어가 비영어권인 신입생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등록한 날짜로부터 30일 내에 CELDT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CELDT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el/>

LAUSD는 영어 학습생의 부모님들에게 다섯 개의 교육 학습지도 프로그램 옵션을 제공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이중언어/이중언어 상용화 기술, 두개 언어 기술 또는 영어 능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 옵션에 대한 정보는 mmed.lausd.net에서 찾아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CAHSEE)

2006학년도부터, 모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학생들은 고교 CAHSEE 시험을 통과하고, 주 및 관할 시의 여러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고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 CAHSEE 시험은 영어 영역과 수학, 두 과목을 포함한다:
1. 영어 및 수학. 영어 시험은 선다형 문제와 작문으로 구성된다. 선다형 문제는 학업 분석력, 독해력, 문학적 반응 및 분석, 작문 전략, 작문 관용법(스펠링, 문법, 및 구두법)을 평가한다. 선다형 문제에 더불어, 학생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거나 문학 작품 또는 정보 문구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논술해야 한다.
 2. CAHSEE의 수학 영역은 주 수학 학습기준을 평가하며, 통계, 자료 분석 및 확률, 숫자 개념, 측정 및 기하, 대수 및 함수, 수학 논리, 대수 I이 포함된다. 학생은 계산력 및 산수 기초력이 단단함을 보여주어야 하고, 소수점, 분수, 퍼센트 계산도 포함된다. 수학 영역은 전부 선다형 문제로 구성된다.

모든 학생은 10학년때 처음으로 CAHSEE 시험을 치르며, 10학년때 CAHSEE 시험의 두 개 과목 중 하나 또는 양쪽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여러번 기회가 주어진다. 통과하지 못한 과목(들)만 재시험을 치른다. 학교는 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한다. 고교 졸업장과 졸업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주 및 교육구에서 정한 학과목들 이수, 학점 조건 완성, 추가 비-학과목 조건 그리고CAHSEE의 영수 시험 둘다를 통과해야만 한다.

CAHSEE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담당 카운슬러에게 연락하십시오. 부모는 CAHSEE 시험일 후 9-10주 후 시험 결과를 통고받는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hs/>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조기 평가 프로그램 (CSU-EAP)

EAP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CSU)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의 합동 프로그램이다. EAP는 12 학년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와 수학에서 대학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조기에 평가받을 수 있다. 더불어, EAP는 CSU신입생들과CCC에게 요구되는 영어 그리고/또는 수학 배치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EAP는 CAASPP 스마트 발란스드 의 11 학년 대상 ELA과 수학 학력고사 점수를 접목시키고 있다. 11 학년때 이 학력고사를 치르는 학생은 자동적으로EAP에 참여하게될 것이다. 학생 자신의 대학 학업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리기를 원한다면, 학생은 자발하여 그 점수를 CSU 와 CCC에게 공개할 수 있다.

CAASPP 프로그램 CSU/EAP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카운슬러 또는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st/>

휴대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방침에 의하면, 학생들은 휴대폰, 전자 신호 전달 기구를 정규 학교 시간동안 사용할 수 없다. 학생들은 휴대폰, 페이지, 전자 신호 전달 기구를 교정에서 소지할 수 있지만 이런 기구는 “오프”로 해두고 락백, 백백, 지갑, 주머니 등 정규 학교 시간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휴대폰, 페이지, 전자 신호 전달 기구는 방과전, 방과후 시간 또는 학교 활동 시간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구, 주 및 전국 학력 평가 실시 중에는, 학생은 전체 테스트 기간 동안 언제라도 모든 허용되지 않은 전자 도구를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 수업 시작 전 그리고 방과후에라도 교직원들이 휴대폰, 페이지, 전자 신호 전달 기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자율 위원회(School Site Council)를 통해 보다 엄격한 휴대폰 방침을 채택할 수 있다 통학버스 내의 휴대폰 사용은 비상 상황에만 국한된다; 운전사의 허락이 요구된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800) 522-8737로 연락하십시오. 본 교육구는 휴대폰 또는 아이패드, 카메라, 전자게임, 라디오, CD 플레이어, 컴퓨터 등과 같은 개인 귀중품의 분실 또는 절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학생 기록 정보에 대한 이의 제기

- A. 학생 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의 검사/검토는 정규 학교 시간에 행해지며, 학부모(또는 해당되는 경우 학생과)와 학교 직원이 상호 편리한 시간으로 추진될 것이다. 교육구 유자격 직원이 반드시 참석하여 서류 보관인의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일개 학생의 학생 기록이 다른 학생 관련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자료를 검사 및 검토를 원하는 부모(또는 학생, 해당되는 경우)는 당사자 부모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만을 볼 수 있다. 부모(또는 학생, 해당되는 경우) 교육 기록의 일부분 또는 전체 내용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가 사본을 제공할 것이다. 해당 학교 또는 교육 서비스 센터는 요청한 사본의 첫 페이지는 25센트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10 센트(\$.10)의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가주 교육법 제 49070조에 의하면, 부모(또는 학생이었던 사람)는 성적을 제외한 다음의 기록 정보 제거 또는 정정에 대한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해당 학생 기록의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틀린 정보
 2.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결론이나 추정
 3. 외부 비전문인에 의한 결론이나 추정
 4. 기록된 관찰 내용의 시간, 장소, 관찰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은 개인적인 관찰내용을 근거로 한 경우
 5. 오도 내용
 6. 해당 학생의 사생활 또는 권리 침해하는 내용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교육 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교장이 부모가 제기한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록은 정정되거나 제거될 것이다. 만약 교장이 부모의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부모는 항소할 수 있다. 교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항소는 해당 교육 서비스 센터 교육감에게 제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교육 위원회에 제기하게 된다. 교육 서비스 센터 학습 담당 교육감과 교육위는 중립적인 패널 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이의 제기 내용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만약 패널이 부모의 이의를 인정하는 경우, 이의 제기된 자료는 정정 또는 제거 및 소멸될 것이다. 만약 부모의 이의가 최종적으로 거부된 경우, 부모는 해당 정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이의 제기된 정보가 변경, 제거되지 않는 한 그리고 변경, 제거될 때까지, 이런 진술서는 학생의 학교 기록의 일부가 된다.

- B.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별개의 절차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66조에 의하면, 사무 또는 기계상의 오류, 사기, 불성실, 무능력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가 학생에게 내린 성적은 최종적이다.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는 캘리포니아 법규 및 LAUSD 방침에 의거하여 실시될 것이다. 성적 변경 요청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참고하십시오.
- C. 교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나 정보는 해당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교직원의 대리교사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없으며 그리고 부모 또는 성인 학생이 조사, 검토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록이 아니다.
- D. 학생이 등록하기를 원하거나 등록 의사가 있는 학교가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교육적 기록은 해당 학교로 보내진다.

고소 제기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에 대한 교육구 절차 관련 고소장을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그리고/또는 가족 정책 준수 부서, 미 문교부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Washington, D.C. 20201.

거주지/비상시 연락처 변경

주소, 전화번호 또는 비상시 연락처의 변경 내용을 학교에 알리는 것은 부모, 보호자 및 포스터 케어 성인의 책임이다. 학교가 거주지 정보 조건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 했다고 가정할 경우, 학생의 가정이 주소 변경 이후 30일 달력 날짜 이내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불이행한 경우, 지속적인 등록 허가(Continuing Enrollment Permit) 권리가 몰수되는 사유가 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내용을 문서(미 우편물)과 구두 전달(전화, 휴대폰)의 두가지 방법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학생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학부모/법적 보호자나 탁아인에게 즉각적으로 연락취하기 위해, LAUSD는, EC 49408조에 의거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비상시 연락처 정보를 학교의 정식 이머전시 카드(서식 34-EH-12)에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학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탁아인은 학생이 학교에 등록할 때마다 이머전시 카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이머전시 카드의 기재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집 주소 및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
- 직장/비즈니스 주소 및 직장 전화번호
- 친척/친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로서 이들은 학부모/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비상 시 해당 학생을 픽업해서 돌보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녀가 학교 버스로 왕복 통학을 하는 경우, 자녀의 버스 노선 정보; 버스 노선 번호, 승차장 장소를 포함하여 기입한다. 더불어, 장애 학생의 부모는 비상시 자녀를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이면전시 카드에 기재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학생은 보내지지 않을 것이며, 단지 각 케이스 당 학부모/법적 보호자가 서면 허락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는 적어도 일년에 두번 이런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갱신해두어야만 한다.

아동 학대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

아동 학대가 발생했거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합당한 의심이 가진 교육구 직원은 의심되는 아동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이런 신고는 해당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 즉 관할 경찰서, 웨스트 코, 아동 및 패밀리 서비스국에 의뢰된다. **법에 의하면, 교육구 경찰국(LASPD)는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LASPD는 아동 학대 신고를 접수받지 않을 수도 있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신고된 경우, 신고한 직원 당사자의 신원은 기밀에 부처진다.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품행

본 교육구는 서약하는바, 학생과 접촉하고 교육시키는 직원과 개인들은 학생들과의 행위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 그리고 긍정적이며, 전문적이고, 비-착취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교육구는 본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을 접하거나 함께 학습하는 개개인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과 함께 부적절한 행위나 행동의 어떠한 것도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다. 학생을 접하거나 함께 학습하는 직원 또는 개개인에 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과의 행위나 행동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염려 사항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 행정관에게 상의하거나 교육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로 연락하시오.

교육법 제 44807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사는 등하교 시, 운동장 또는 휴식시간 동안 학생에게 학생의 품행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예, 신체 고통을 유발함) 금지한다. 교사, 교감, 교장 또는 기타 자격증 소지 교육구 직원이 그의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취할 수 있는 특권과 동일한 정도로 신체 규제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질서 유지, 재산 보호 또는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하고 적절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타당히 필요한 신체적인 규제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런 신체적인 규제 수행으로 인하여, 해당인은 형사 소추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규정은 추가 사항이며 제 49000조의 규정을 우세적으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조정된 안전 및 건강한 학교 평가 및 업무 수행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안전 학교 플랜(Safe School Plans)" 준비에 대한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2281조를 준수해야만 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2004년 아동 영양 및 여성, 유아 및 아동 재위임 법(the Child Nutrition and Women, Infant, and Children-WIC- Reauthorization Act)을 준수해야만 하여, 복지 방침을 결성하고 모니터하기 위함이다. 이 플랜에는 폭력 방지, 긴급 대피 준비, 교통 안전 및 위기 중재 그리고 복지 방침을 다룬 조정된 학교 보건의 포함된다. 본 교육구는 참고 지침서 번호 REF-5511를 발행했는데, 이는 조정된 안전 및 건강한 학교 플랜, 제 1판 - 예방 프로그램, 제 2판 - 긴급시 비상 플랜, 제 3판 - 복귀 절차는 "조정된 안전 및 건강한 학교 플랜"의 안내서 역할을 한다. 학부모는 교장 또는 학교 안전 계획 위원회 멤버로부터 조정된 안전 및 건강한 학교 플랜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조정된 안전 및 건강한 학교 플랜을 매년 검토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갱신할 책임이 있다. 해당 학교 행정관은 본 플랜서를 인쇄하여 충분한 사본을 준비하여, 모든 교직원과 일반인이 이를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본은 주요 직원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메인오피스, 교직원 식당이나 휴게실, 비상용 상자에 준비되어야 한다

CORE 면제 우선순위 상급학교 진학 초이스 프로그램은 (PSMCP)

CORE 면제 우선순위 상급학교 진학 초이스 프로그램은 (PSMCP) 교육구가 창설한 공립학교 선택 프로그램으로서 유자격 유치원생, 6, 7 학년생과 9 학년생을 대상으로 CORE 면제권 우선순위 학교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CORE 면제 PSMCP를 통해 부모는 자녀가 등록할 학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학교 배정은 교육구에 의해 정해진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CORE 면제 우선순위 상급학교 진학 초이스 프로그램은 (PSMCP) 초이스 책자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초이스 책자는 10월에 배포되며 신청서 마감일은 11월이다. 온라인 신청서 마감일도 동일하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http://eChoices.lausd.net>를 검색하도록 한다. 교육구-요금 지불 교통편은 전학하는 학교에 제공되며 그리고 방침과 지침사항에 의거한다.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학생 통합 서비스 부서에 (213) 241-6572로 연락하도록 한다.

훈육 기초 방침

본 교육구는 안전한 교실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서약한다. 각 학생은 자신의 웰빙을 도와주는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각 교육자들은 가르칠 권리가 있다. 각 고용인은 학업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 교육구 기초 방침에 의거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토대로 한 훈육 문화를 개발하고 정교화하여 시행하는 일관성있는 플랜을 설정한다.

2014년 2월 14일, 교육구는 공문BUL-6231.0 훈육 기초 방침: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을 설정했다. 본 문서는 방침의 변화를 소개하며 그리고 이런 변화를 접목하여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학교 훈육 유형은 대응적인 경향이 있었고 형벌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교육구의 변경된 방침은 훈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법을 나타내며, 적절한 학생의 행동을 장려하고 배움을 높이는 유형을 의미한다.

훈육 기초 방침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dfp.lausd.net>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초등교 및 중등교 문화 권리장전의 복사본은 부록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등교복/교복



학교는 학생의 보건 및 안전에 적합한 복장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학교 복장 규정 및 교복 방침은 미합중국 헌법 제 1 수정안 및 캘리포니아 헌법 1조 제 2하에 명시된 권리와 일치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만 한다.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강단 복장”은 학교 환경의 보건 및 안전에 위협한 것으로 결정했고, 따라서 그런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다. 모든 등교복 규율은 남녀 성별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즉 학생은 자신의 성별과 다른 옷차림을 했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처해지거나 이런 옷차림 착용을 금지할 수 없다.

A. 복장 규정

학생은 청결, 보건, 단정, 안전함을 유지하고, 학교 활동을 하기 위해 적합한 복장 및 외모를 지니도록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학생의 복장 및 머리 스타일은 단정해야 하며 다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 활동에 지장 또는 혼란을 실제로 초래했거나 학생이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실제로 방해하는 것
-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한 행동
-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것

B. 교복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183조에 의해 운영 위원회는 교복을 의무적으로 착용케하는 교복 방침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게 주었다. 각 학교의 자율 위원회의 합의 하에 학생 교복 방침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학교가 시행하는 모든 교복 방침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부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교복 착용을 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부모가 교복 착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교복을 입지 않을 때, 그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처분이나 차별 조치가 내려질 수 없으며 타학생에게 주어진 권리 및 특권을 교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런 권리나 특권을 거절할 수 없다.

위의 지침 사항과 일치하는 머리 스타일, 구레 나루, 수염을 길이 또는 스타일에 상관없이 기를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가 결정한 의복을 패션, 스타일 또는 디자인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다.

교육적 옵션 학교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교육구가 대안 학교를 제공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했다. 대안 학교는 보다 적은 규모 학교 그리고 보다 개별적인 학업 환경에서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방식으로 고안되었다. 이런 학교들은 해당 교육 서비스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적 옵션 학교는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는 학생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 졸업의 통로를 제공한다. 학생은 전인 교육을 다루는 질적으로 높은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 대인관계 및 작업 기술을 연마한다.

교육적 옵션의 목표는, 고교 졸업장 취득하게 하여, 대학 진학과 커리어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해당 교육 서비스 센터에 연락한다.

비상시 대책 - LAUSD

모든 LAUSD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비상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모든 학교는 자세한 내용이 실린 비상시 플랜을 갖추고 있고 교직원은 비상시 이 플랜을 따라 행동을 취한다. 학교는 교육구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정기 예행 연습을 실시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의조치를 제공한다.

학교는 다음 종류의 비상 대책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

화재 예행 연습 -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매달 1회 예행 연습을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매 학기에 1회 실시한다.

지진 예행 연습 - 매년, 모든 학교들은 캘리포니아 대지진 웨이크-아웃의 일부로서 정식 예행 연습(full-scale)을 1회 실시한다. 가을에 실시되는 예행 연습은 교육구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서, 학교 재난 대비책의 모든 부분을 예행 연습한다.

“락다운” 예행 연습(“Lockdown” Drill)- 학교는 정기 예행 연습을 통해 교정 내 또는 인근에 발생한 위협 상황에 대비한다.

셸터 인 플레이스 예행 연습 - 학교는 정기 예행 연습을 통해 학교 인근 주변의 환경적 위협에 대처할 것이다.

드랍, 커버, 홀드 드릴(Drop, Cover and Hold On Drill) - 매달, 이런 예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진 발생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상기시킨다.

테이크 커버 드릴(Take Cover Drill) - 학생이 학교 주변의 총성, 폭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자녀들에게 이런 예행 연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말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드릴을 통해,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각 학교는 비상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긴급 비품을 갖추어 놓는다. 다음 비품이 포함된다: 물, 음식, 응급치료 용품, 수색 및 구조 기구, 위생 용품. 교직원은 이런 비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환경 보건 및 안전 검사관의 의해 조사받는다.

비상 사태 발생시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는 비상사태 발생시 학교의 비상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자녀를 어디서 픽업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시간도 줄이고 불안감도 적어질 것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시 대책이 준비되어 있고, 비상시 이런 대책을 따를 것이라는 것을 부모들은 유념하도록 한다

자녀들은 비상사태 발생시 부모가 자신을 인도하고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따라서 차분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부모의 태도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다. 비상 사태로부터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점은 큰 역할을 한다. 해당 학교의 비상 대책에 대한 문의는 학교 행정인에게 연락할 것을 권한다. LAUSD커뮤니티 비상 대책 앱을 <http://parentemergencyinformation.lausd.net>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교육구 이머전시 플랜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머전시 서비스 부서에 (213) 241-3889로 연락한다.

비상시 대처

비상사태 발생시, 부모들은 공립 학교가 커뮤니티 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법규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일반 공공 건물 보다 더 높은 건축기준에 따라 세워지며 이를 필드 법규(Field Act)라고 한다. 따라서 학교는 일반 가정집 또는 상업용 건물 보다 피해가 더 적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경보 및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화재/생명 안전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사태 발생시, 학교는 학생들을 가장 안전한 장소로 옮길 것이다. 화재나 지진 발생시, 학생들은 교실을 나와서 건물들과 멀리 떨어진 집회 장소 즉 대개는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게 된다. 락다운이나 쉼터 인 플레이스의 경우, 학생들은 실내로 옮겨가서 그 건물을 보호처로 이용할 것이다.

비상사태 발생시, 자녀를 픽업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학교 주위의 리퀘스트 게이트(Request Gate)로 갈 것과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 학교가 학생들을 보내는 바로 그 장소가 된다. *자녀의 이머전시 카드에 기재된 이름의 사람만 학생을 픽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모는 이머전시 카드의 내용이 최신의 것으로 정확하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머전시 연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학교에 통지하도록 한다.*

폭력 협박이 있을 경우, 학생들은 다칠 위험이 없는 교실로 들어가 보호받을 것이다. 락 다운 비상시, 법 집행기관이 교정이 안전하다고 발표하기 전에는 부모는 자녀를 픽업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는 학교가 자녀를 안전한 교실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녀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때에 한해서 학생을 보낼 것이다.

급식 서비스 부서(Café LA)

LAUSD 급식 서비스 부서(Food Services Branch)는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학교 아침 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SBP)이며 두번째로 큰 규모의 전국 학교 점심 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NSL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매일 7시1분 1천여명의 학생들에게 709 개의 학교 카페테리아와 85개의 차일드케어 급식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더불어, 뉴먼 영양 센터에 매일 1시4분4천 개의 급식을 준비하여, 학교 현장에서 급식 준비가 가능치 않은 255개교에 급식을 배포하고 있다.

SBP와 NSLP는 영양있는 학교 급식 제공을 통해 배고픔과 영양실조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아침 및 점심 급식뿐 아니라, 다수의 LAUSD 학교는 방과후 간식 프로그램, 토요일 급식 서비스 및 섬머 식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규 학교 밖에서도 급식이 필요한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school.

교실에서 아침 급식

교실에서 아침 급식 (BIC)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수업 시작 후 첫 10분동안 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오전 수업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섭취한다. 무료이며, 이 급식의 참여는 전적으로 학생 자발에 의거한다. LAUSD총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BIC는 600 여개의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양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BIC긴급전화 및BIC피드백 이메일을 통해 귀하의 소견과 의견을 제외할 수 있다.

급식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자녀 학교의 급식 서비스 매니저에게 가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급식 서비스의 여러 영역, 음식 준비, 위생, 안전 및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는 갖추고 있다. 더불어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영양 정보와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주요 연락 전화번호

급식 서비스 부서	(213) 241-6419 or (213) 241-6422
디렉터 사무	(213) 241-2993
급식 신청서 문의	(213) 241-3185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http://cafe-la.lausd.net>에서 가서 로그인하십시오.

급식 신청서

가족수 그리고 가계 소득이 연방 소득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급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은 학년도가 시작될 때 급식 신청서를 새로이 작성해야만 한다.

- 무료/할인 급식 신청서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의 가정에 우송된다. 개학일 이후에는 학교 현장에서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다.
- 급식 신청서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상으로 제출하면 48시간 내에 처리된다. Café LA 웹사이트 <http://cafe-la.lausd.net/new-online-meal-application> 을 검색하십시오
- 학교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된 주소를 이용함으로, 현주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신청서를 받으면 작성을 한 후 동봉된 봉투에 넣어 보내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신청서가 신속히 처리된다.
- 한 가계당 한장의 신청서만 요구된다. 중복 신청서는 귀하의 서류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다.
- 서류 처리가 된 후, 자격 여부 서신이 집 주소로 우송될 것이다.
- 신청서는 해당 학년도 동안 받아들여 진다. 소득이나 가족수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검중이나 증빙 서류를 보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다.
- 급식 신청서 작성법은 본 부서 웹사이트에 실려있고 알메니언,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번역된 서식도 이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

급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급식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 또는 무료/할인 급식 자격이 없는 학생들은 정규 풀 가격을 지불해야 하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야만 한다. 다음은 2015-16 LAUSD의 급식 가격이다:

학생 급식 가격		
정규 가격	아침 급식	점심 급식
초등교	\$2.25	\$2.75
중학교	\$2.50	\$3.00
고등학교	\$2.75	\$3.25
할인 가격	아침 급식	점심 급식
초등교	\$0.30	\$0.40
중학교	\$0.30	\$0.40
고등학교	\$0.40	\$0.40

급식 돈이 없거나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은 학생의 경우, FSD는 치즈 샌드위치 반조각과 4 온즈 주스(사과 주스)를 제공할 것이다.

연방법과 미 농산부 정책에 의거하여, 본 기관은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권 접수는 다음으로 한다: USDA Director, Office of Civil Rights, Room 326-W, Whitten Building,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202) 720-5964 (음성 및 TDD)으로 전화한다. USDA는 제공자와 고용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영양 및 카페 엘에이 메뉴

LAUSD는 교육위원회의 결의안을 통해 영양 방침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건강한 음료수 판매 의결안”과 “비만 예방 의결안”은 미국에서 선두적인 조치로 간주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건강한 음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여 비만, 당뇨 그리고 기타 여러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하는 노력면에서 미국의 리더로 인정받았다. 최근에 채택된 교육위 의결안에는 “급식 및 영양 정책 향상,”과 “양호한 급식 조달 방침”이 2012년에 채택된 결의안들이다. 이런 결의안들을 통해 LAUSD는 인근 농장지로부터 식품을 조달하여 섭취하는 시간이 20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확장 추진하게 되었다. 본 부서는 보다 나은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최고의 영양 기준을 포함할 것이다.

현재의 메뉴 내용:

- 공인 영양사에 의해 계획된다.
- 통곡물을 사용하며 통곡물 위원회 멤버이다.
- 매일 다양한 식단과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단도 제공한다.
- 고기 안 먹는 월요일에 참여한다

본 부서는 결의안을 수행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돕고자 한다:

- 지난 오 (5) 년동안 학생의 과일과 야채 섭취량을 두배로 늘렸다.
- 주 및 연방 영양 기준에 준하는 건강에 좋은 급식과 학생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과의 균형을 맞춘다.
- 학생의 입맛에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는 급식을 시범적으로 제시하고 메뉴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우리 메뉴로 정식 책정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가 최소 75%는 되어야 한다.

급식 메뉴는 자녀의 학교 또는 급식 서비스 부서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만약 자녀에게 특별 식단이 요구되는 경우, 카페테리아 매니저나 학교 양호사로부터 “특별 식단을 요청하는 의뢰서 (Medical Statement to Request Special Diets)”를 받도록 한다. 본 부서의 웹사이트 (<http://cafe-la.lausd.net>) 학부모 페이지에서도 서식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 식단이 필요한 학생**에 실린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외국 학생 입학

LAUSD 학생 서비스 외국 학생 입학부(FSAQ)는 현재 가주 정부에서 발행한 F-1 또는 J-1 학생 비자를 소지한 9-12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내셔널 학생이 LAUSD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I-20 발행할 권한이 있다. 이런 절차와 외국 학생 입학 자격 조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http://studyinla.lausd.net>을 검색하거나 (213) 202-7581로 연락하십시오.

포스터케어 - 아동 및 가정 담당국 (DCFS) 또는 보호감찰 하에 가족과 살지 않는 학생들

DCFS 또는 보호감찰 감독을 받는 아동 그리고 공인 포스터홈, 그룹 홈, 친척 집에 사는 아동들은 학교 등록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다. 하원의 법안 490 규정에 의거하여, 포스터 아동들은 학교에 즉각적으로 등록되며(교육법 제 48853.5항) 그리고 교육자, 교직원, 소셜워커, 보호감찰원, 양육인 기타 관련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들의 교육적 필요를 맞추도록 한다.

하원의원 법안 1933에 (2011년 1월 1일부터 실효) 의거하여, 포스터 아동을 처음으로 학교에 배정할 때 또는 차후 배정시, 해당 포스터 아동을 담당하는 관할 교육기관은 법정 관할권 기간동안에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약 법정 관할권이 그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그 학년도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3년 9월 23일부터 실효되는 하원의원 법안 216은 고교 2년제 과정을 이수한 후 타학교로 전학한 포스터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졸업 면제권을 제공한다 (취득한 학점 수 또는 등록 기간 둘 중 하나에 자격이 있는 경우). 이런 기준에 해당되는 포스터 학생은 교육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교과목 이수 및 기타 필수조건 그리고 주차원의 교과목 필수조건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단지, 교육구가 그 학생이 고교 과정이 끝날 시점 또는 고교 4년차에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졸업 필수조건을 완성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구가 포스터케어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고교 5년차에 졸업 필수조건을 합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완성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교육구는 학생이 그 학교에서 5년차를 다녀서 졸업 조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일단, 어떤 학생이 이런 면제권에 자격을 갖추게 되면, 그 학생의 포스터 케어 건이 종료되거나 또는 타학교로 전학하여도 이런 면제권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만약 어떤 학교, 학생, 교육 권리 보유자, 소셜워커, 보호 감찰관이 어떤 학생에게 AB 216 자격을 갖추주기 위해 그 학생을 타학교로 전학을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일은 불법행위에 속한다. 추가 정보 또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학교 행정관 또는 중고교 학습지도 부서에 (213) 241-7510으로 연락하십시오.

학부모, 보호자, 포스터 케어 양육인, 소셜워커 그리고/또는 보호감찰원은 학생의 거주지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급적 빨리 교육구에 알려서 적정 시한 내에 전학할 새학교를 알아보고 학생 기록을 새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관련 포스터 케어 문의가 있다면 학생 서비스 포스터 케어 부서에 (213) 241-3552로 연락하십시오.

정치적 행위, 군중, 집회, 데모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학생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교정 내에서 정치적 또는 언론의 자유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한 서면 자료를 배포할 있다. 비-수업 시간동안 교정에서 집회를 결성하여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토론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비-수업 시간동안 교정에서 평화스런 데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학생의 언어, 표현 또는 행동이 상스럽거나, 음용하거나, 명예 훼손, 서면의 명예 훼손, 학생을 자극하여 건물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학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요소인 되지 않는 한, 학생은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교정 내에서 또는 학교 시간 동안 언론 자유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행정관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반경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학교 행정관은 학생 및 교육구 고용인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정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시간, 장소, 언어 및 행동의 방식에 대해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학교 행정관 또는 데모, 집회, 실-인 등의 관련 교육구 방침에 대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징계 처분 받을 수 있다.

데모 동안 교정 또는 교실을 자발적으로 떠난 학생은 교정이나 교실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거부하는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는 결석으로 기록되며 더불어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다. 학생의 데모 또는 워크아웃이 일반 대중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 관할 법 집행기관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생의 언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지만, 교육구 직원은 이런 학생의 데모, 자료 배포, 집회, 실인 또는 워크아웃을 장려, 후원하지 않으며 또는 학생들에게 참여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자녀의 학교 행정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성적 변경 요청 절차

교육법 제 49066에 의하면, 다음의 근거 하에, 자녀의 성적 점수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오류
- 사기
- 불성실; 그리고/또는
- 성적 책정을 할 능력이 없음.

공립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취득될 때, 각 학생의 성적은 해당 과목 교사에 의해 정해진다. 위에 명시된 근거가 없을 때에는 해당 성적은 최종 성적이다.

성적 변경에 대한 요청은 성적표가 우송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급 교사에게 먼저 해야만 한다. 교사와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는 교장에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을 교육 서비스 센터에 항소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단계로서는 교과과정, 학습지도 및 학교 지원 부서에 항소하는 것이다. 각 단계마다, 부모는 변경을 요청하는 타당성 관련 정보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교장에게 문의하거나 관할 교육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학생 성적 변경 요청서(Request to Change Pupil Grades Bulletin) 사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 번호는 BUL-1926.1이다.

총기로부터 안전한 학교

연방법 총기 불용납 안전 학교(Federal Gun Safe Schools Act) 및 캘리포니아 법규에 의거하면, 학교 교정에서 총기 소지를 금한다. 이런 법규들에 의하여, 총기를 소지한 학생이 발견되면, 해당 학생은 체포의 대상이되며, 즉시 퇴학 조치를 권고받을 것이다. 퇴학 기간은 일년이다. 해당 학생이

무기를 소지했다고 판명되는 경우, 운영위는 그 학생을 퇴학시킨다. 퇴학 기간은 일 년이다 "소지(possession)"에는 라커, 지갑, 백팩, 자동차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건강 관련 정보

중병, 장기 질환, 부상, 수술 또는 기타 입원(정신과 및 약물 또는 알콜 외래 치료) 후에 재등교하는 학생은 재등교를 허용한다는 공인된 캘리포니아 의료 제공자의 서면 허락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체육 활동과 관련한 추천 사항도 있을 경우 포함시킨다.

봉합(스티치, 스테이플), 에이스 반창고(신축성이 있는 반창고, 팔걸이 봉대), 깁스, 목발, 지팡이, 부목대 또는 휠체어를 탄 상태로 재등교하는 학생은 재등교를 허락한다는 의료 제공자의 서면 허락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신체 활동, 이동, 안전 관련 금지사항 그리고/또는 권고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잠정 기간동안 일반 체육 수업이나 수정된 체육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체육 수업을 면제(10주 미만)받을 수 있다. 체육을 면제 해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서는 최고 5일까지 허용되며; 따라서, 5일 이상 면제를 원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료 제공자가 작성한 서면 요청서가 필요하다.

학교는 부모/보호자의 동의없이, 학교는 12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비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학교 수업을 면제해 줄 수 있다.

교육법 제 35183.5조 규정에 의하면, 실외의 휴식시간 또는 체육시간 동안 보호용 장비(모자, 선바이저 그리고/또는 선글라스) 착용이 허용된다. 학교는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35183.5조에 의거하여 자외선 차단용 의복/모자의 유형을 규제할 수 있다. 학교는 보호용 물품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학생들은 교정에서의 실외 활동 시 허용될 수 있는 자외선 보호품으로서 선스크린(의사 처방 없는 제품)도 사용할 수 있다.

천식 프로그램

천식은 학생의 성취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석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LAUSD 유자격 양호 서비스부, 천식 프로그램은 학생과 부모에게 천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 만약 학생이 천식 증상으로 인해 자주 결석하고, 천식으로 인해 의사를 자주 방문해야 하며, 천식으로 인해 응급실이나 입원을 했다면, 이런 천식이 잘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이다. 유자격 학교 양호사 전화하거나 양호 서비스부 (213) 202-7580로 연락하여 천식 프로그램에 해당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천식 프로그램에 의뢰된 학생은 증상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석일수도 줄일 수 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LAUSD 천식 웹사이트 www.asthmal.com 를 검색하도록 한다.

전염병 예방

전염병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전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은 학교에 다시 출석해도 된다는 규정이 충족될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출석 제외 및 재출석 지침사항은 교육구 그리고 주 보건부와 주 교육부에서 정한 방침을 따른다. 더불어, 전염병 관련 지침사항은 질병 통제 및 예방국 그리고 미국 단체로부터 나온 내용이다. 구체적인 질병 지침은 학교 내에서의 전염병 참고 안내서를 참고한다. 학생 의료 서비스 웹사이트 <http://SMS.lausd.net> 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잠정적으로 학생을 출석 금지시키는 것은 주로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이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결막염("삼눈-pink eye"); 피부 염증(농가진), 패혈성 인두염, 수두, 유행, 머릿니, 백일해. 출석금지지는 즉시 행해지거나 당일 학교가 끝날 무렵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질병, 전염 속도 그리고 교육구, 카운티 및 주 방침에 달려있다. 재출석은 학생의 상태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의한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 그리고/또는 100도 이상으로 열이 있어서 결석한 학생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이런 증상이나 열이 없어야 학교에 다시 출석할 수 있다(REF-4832.0).

학교가 수두(chickenpox), 머릿니, 기타 위험할 수 있는 전염병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학부모/보호자들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녀가 수두에 노출되는 경우 특히 위험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들은 유자격 학교 간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학생은 면역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지닌 학생 그리고 암 또는 장기이식 치료양 동안 특정 약을 복용하는 학생을 포함한다. 머릿니 치료 및 예방법은 양호사나 학교 보건 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등록할 때, 의료 제공자 또는 보건국이 작성한 예방 접종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현지점에서 접종해야 하는 모든 예방 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경우, 신입생은 입학되지 않을 것이다. 등록 당시 백신이 추가로 더 요구되는 학생 또는 서면상 기록을 제시 못한 학생에게 유예기간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구에 처음으로 등록하거나 교육구에 속한 타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현지점에 요구되는 모든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더불어, 7학년으로 새로이 입학하거나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은 백일해 백신 주사(일명 Tdap)를 7세 생일날자 또는 그후에 접종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예방 접종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열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이다. 주(state) 시행 수칙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은 해당 필수 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전염성 질병에 노출된 학생은 공공 보건국의 제령에 따라 출석을 못할 수도 있다. 의사는 예방접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킬 수 있다(예: 의료 상태로 인해). 부모의 사적 또는 종교적 믿음으로 인해 자녀를 면제시킬 수 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주법에 의거하여, 학교 입학이나 진급에 요구되는 예방접종으로부터 학생을 면제시키기를 원한다면, 새로이 요구되는 개인 신념 면제 서식서(PBE)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한다. PBE 서식서는 의료 케어 제공자와 부모가 서명 날인하는 진술서로서, 예방접종의 혜택과 위험성 그리고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해당 의료인이 제공했고 그 부모는 이런 정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서술한 진술서이다. 학교 또는 차일드케어 제공자에게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한다.

학교 보건 관련 직원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학교-중심 클리닉이 여러 곳에 소재한다. 교육구 양호 서비스에 (213) 202-7580으로 연락하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처방약 투약/도움 제공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423조에 의하면, 정규 학교일 동안 약(의사 처방약 또는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약)을 복용해야 하는

학생은, 다음을 교육구에 매년 한 차례 제출한 경우 유자격 학교 간호사 또는 기타 담당 교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공인된 의료 케어 제공자로부터 해당 처방약의 복용법, 양, 복용 시간 간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진술서를 제시하는 경우; 그리고
2. 의료 케어 제공자의 의사의 진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학생이 약을 복용함에 있어서 교육구의 도움을 희망한다는 내용서를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제출하는 경우.

서면 동의서 없이, 학생은 약을 교정에서 소지하거나 복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구가 증빙 서류를 받았을 경우, 학생은 특정 약 (예: 흡입용 천식 약 또는 자동-투여가능한 에피네프린 약)을 소지하거나 자신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 다음이 포함된다:

1. 약명, 복용법, 복용량, 복용시간 그리고 학생이 혼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자세히 적은 의료 케어 제공자의 처방 관련 문서; 그리고
2. 학생 혼자 힘으로 복용해도 좋다는 허락 내용을 적고, 유자격 양호사와 의료 케어 직원이 복용약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 학생 의사에게 연락해도 좋다는 허락 내용 그리고 부작용 발생 시 교육구나 교직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진술서.

특정 천식 치료법(Asthma Action Plan)은 학생이 학교에서 천식약을 소지하고 스스로 복용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처방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복용약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생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필수 양식서를 유자격 양호사나 행정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학교 보건 관련 직원은 처방전을 작성하지 않으며 처방약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실효되는 상원의원 법안 1266에 의거하여 (공공 보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기), 교육구, 교육 카운티 부서 및 차터 학교들은 비상 에피네프린 자동-주입기를 양호사와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원 직원에게 제공하여, 명시된 바와 같이, 양호사와 교육을 받은 직원은 비상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권한이 주어지며, 해당 학생들은 심각한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허용된 처방약이 없어야 하며 그리고 과민성 반응(심각한 알려지지 반응)으로부터 고통받거나, 합리적으로 보기에 이로부터 고통받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야 한다.

구강 건강 정보

공립학교에 등록된 유치원생 또는 이전에 공립학교를 재학한 적이 없는 1학년생들은 해당 학년도 5월 31일까지 구강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았다는 증빙서를 제시해야만 한다. 해당 학생이 공립학교에 처음으로 등록한 날짜로부터 12개월 이전의 검진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규는 현재 유치원이나 1학년으로 등록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구강 검진은 공인 치과 의사, 기타 공인/면허 치과 전문인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부모/보호자는 기권서에 서명함으로써 구강 검진 법규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보험을 받는 치과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검진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녀의 구강 검진을 원치 않는 경우. 구강 검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학생이나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벌칙을 전혀 없다(예: 검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기권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출석을 거부당하지 않는다).

건강 검진

1학년생들은 입학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또는 1학년 입학 후 3개월까지 종합건강 검진 및 의료 평가를 요하는데 이는 아동 보건 및 장애 방지(CHDP)의 지침 사항과 일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CHDP 또는 이와 상응하는 검진은 사설 의료 제공자, 보건국 진료소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구 CHDP 직원이 실시할 수 있다. 초기 유아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요구되지 않지만, LAUSD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학생은 최근의 건강 검진서를 학교에 제출할 것을 권한다. 이런 용도의 양식서는 “학교 입학을 위한 건강 검진서”(PM 171)라고 불리우며, 양호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의료 보험이 없거나, 부분 보험이거나 또는 부모가 메디칼 수혜자인 경우, 자녀는 학교에서 CHDP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CHDP 검진에서 요구하는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양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만약 부모/보호자가 학교에서 자녀의 건강 검진(시력 및 청력 검사 포함)을 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해당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진술서를 행정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주(state) 의무 조항에 의거하여, 시력 검사 및 청력 검사는 학교에서 실시될 것이다. 7학년 여학생 및 8학년 남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척추 측근 (척추가 한 방향으로 기우는) 증상이 있는가를 검사하게 된다. 위의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발견한 내용이 앞으로 주의가 요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해당 내용을 통지 받게 된다.

학교와 학교 대항 운동에 참여하는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은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실시한 건강 검진을 매년 받아야 하며, 이는 현행 교육구 방침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의료 제공자가 없는 학생은 학교 의사 및 간호사 프렉티션널과의 예약을 통해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에 필요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예약 관련 정보는 학생 의료 서비스 부서에(Student Medical Services) (213) 202-7584로 연락한다.

학교 정신 건강 서비스

학교 정신 건강 부서는 아동, 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그들이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폭넓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학교, 클리닉 웰니스 센터, 그리고 LAUSD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클리닉에는 공인 아동 정신과 전문의, 정신과 간호사, 정신과 소셜워커, 임상 심리학자가 근무한다. 추가 질문이 다면, (213) 241-3841로 연락하십시오.

제 2유형 당뇨 정보

비만 아동 및 청소년은 제 2유형 당뇨, 고혈압, 심장병, 천식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많다. 제때에 관리하지 않으면, 당뇨는 신장 부전, 실명, 심장마비, 사지 절단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국가 기관 및 관할 보건 기관과 함께 공조하여, 제 2유형 당뇨병 정보지를 작성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7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가”라는 본 정보지는 현재 7학년생과 7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시 또는 정규 학급 시간에 제공한다.

고교 졸업 필수 조건

2005년 6월 14일에 LAUSD 교육위원회는 A-G 결의안을 승인함으로써, 고교 졸업 필수조건의 일부로 A-G 학과목 과정 시행을 통해 교육적 형평성을 이룩하고자 한다. A-G 결의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A-G, 15개의 대학 진학을 위한 학과목 과정 완수를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졸업 조건으로 설정했다 (LAUSD 공문 2513.1).

2016년에 졸업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LAUSD 학생은 본 교육구의 졸업 조건들 중 일부로 A-G 순차적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만 한다. 다음 도표에는 A-G 순차적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학과정과 비-학과정 조건을 적정하게 이수한 12 학년생들은 졸업장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과정을 적정하게 완료했으며, 졸업 기념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본 교육구는 졸업 기념식에 참여하는 유자격 학생들에게 졸업모자와 가운을 대여해줄 것이다. 부모는 졸업 모자와 가운을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다.

LAUSD 고교 졸업 필수 조건

과목	2016을 통해 졸업 년도 2019
역사/사회 과목 -- A (2 년))	학생은 최소 UC/CSU 15개의 A- G 학과목 조건을 적어도 D 성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영어 - B (4 년)	
수학 - C (3 년)	
과학 - D (2 년)	
외국어 - E (2 년)	
시각 및 공연 예술 - F (1 년)	
선택 학과목-G (1 년)	
보건 웰스	5 학점
체육	20학점
선택 과목	
졸업을 위해 필요한 총 학점수	210

*** 계류중인 윤리 교육 조건**

고교 졸업장 취득에 필요한 비-학과목: 요구되는 고교 학점 취득, 캘리포니아 고교 졸업시험 (CAHSEE), 두 개 영역 통과, 서비스 학습 조건을 성공적으로 완수, 그리고 컴퓨터 리터러시 조건을 완성해야만 한다. 학부모들은 이 모든 필수조건들을 매년 자녀의 학교 카운슬러들과 함께 대화하기를 학부모들에게 적극 권장한다.

공인 온라인 학교: 학생들은 여러 지역에서 제공하는 공인 온라인 학교에서 A-G 학과목을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학생은 공인 온라인 학교에서 학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다:

1. 해당 온라인 학교는 UC A-G 학과목 목록 웹사이트 <https://hs-articulation.ucop.edu/agcourselist>에 현행 A-G 목록을 가지고 있다.
2. 이수한 해당 온라인 학과정(들)은 온라인 학교의 A-G 목록에 명시되어 있다.
3. 해당 온라인 학교는 그 과정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성적표를 발행한다.

공인 온라인 학교에 동시 등록하여 이수한 학과목의 성적 점수는 LAUSD의 공식 GPA 그리고/또는 졸업반 성적 순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적 점수(들)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책임이다.

카운슬링 요소

중학교/고등학교 보충 카운슬링 프로그램에(AB1802) 의거하여, 7-12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학생, 부모 그리고 카운슬러와 함께 컨퍼런스를 매년 받아야만 한다.

자녀가 중학교에 등록할 때, 부모/보호자 그리고 학생은 카운슬러와 함께 **개별 졸업 플랜 (Individual Graduation Plan - IGP)**을 작성하며 그리고 해당 학생이 고교로 진학할 때 그 IGP를 매년 업데이트할 것이다.

SB 405 에 의거하여, 학생의 커리어 목표, 학업 및 커리어-관련 기회를 검토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학과목 과정을 설명해야만 한다. A-G 필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과정에 속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식별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이는 2006, 2007 졸업생 그리고 그 이후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졸업 조건을 완료했지만 CAHSEE 두 영역을 다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가 통지, 카운슬링, 서비스 모니터 및 학생 기록을 요구하는 **AB 347**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다.

무숙자 홈리스 학생

McKinney-Vento 무숙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법에 의하여, 취약 연령에 해당하는 무숙자 아동들은 비-무숙자 아동에게 제공되는 무료 및 적절한 공립교육을 똑같이 받을 권리를 부여받는다.

무숙자 학생이란 저녁 시간에 주거할 고정된, 적절한 정규 주거지가 결핍된 6세부터 18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되며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 비상 또는 임시 보호처에 사는 학생을 의미한다; 방치된 건물, 주차된 차량 또는 인간의 정규 수면 숙식시설로서 지정되지 않은 건물에서 살고 있다;
- 경제 문제(예: 실직, 퇴거 또는 자연 재난)로 인해 주거지가 상실되어, 다른 가족들에 “얹혀서” 거주하는 경우;
- 호텔이나 모텔에서 살고 있다;
- 자신의 가족과 트레이럴 팍이나 캠핑장에서 주거;
- 병원에 버려졌다;
- 제한적 상황 하에 포스터홈에 위탁을 대기 중인 경우; .
- 학교 다닐 연령으로, 미혼모나 임신부를 위한 숙소에서 살면서, 기타 다른 숙소가 가능치 않는 경우; 또는
- 이주민 아동, 버려진 아동, 집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쫓겨난 청소년들은 위에 명시된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숙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학생은 SRQ(학생 주거지 질문서)를 통해 식별되며, 이는 모든 등록 패키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각 가정은 SRQ에 스스로 현재의 주거지 상황을 식별한다. 각 학교는 반드시 담당 학교 현장 홈리스 연락인이 있어서 SRQ를 홈리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는 해당 학년도 도안 언제라도 해당 학교 또는 학생 서비스 무숙자 교육 프로그램에 자진하여 SRQ로 식별받을 수 있다.

무숙자 학생은 기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를 출석할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그러나 이에 더불어 마지막으로 등록했던 학교나 거주지 학교에서 한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교육구는 학부모/보호자/동반자 없는 무숙자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왕복 통학버스편을 제공한다.

법규에 의하면, 무숙자 학생을 즉시 등록시켜야 한다. 학교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 등록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수 없다. 이전에 다녔던 학교로부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모든 유저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의뢰해 주어야 하는 것은 학생이 새로이 등록한 학교의 책임이다. 의뢰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무료 급식, 특수 교육 서비스, 튜터링, 프리 스쿨, 방과후, 방과후 서비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비스들. 동반자가 없는 청소년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

더불어, 2015년 1월 1일 부터 실효되는 하원의원 법안 1806에 의거하여, 고교 2년을 마친 후 다른 학교로 전학한 무숙자 학생들은 주 전체에 적용되는 학과목 필수조건 초과하는 고교 졸업 조건을 면제받으며, 이에 예외도 적용된다. 더불어 본 법안은 무숙자 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닐 때 이수한 정식 학점 또는 부분 학점을 학과점으로 인정하는 기존의 조항까지 연장 적용된다. 본 법안에 의거하여, 교육구 무숙자 담당인은 퇴학 권고가 있을 때 이를 통지받아야 하며 그리고 퇴학 결정이 정해질 모든 IEP에 초대되어야 한다.

학교 선택이나 등록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학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분쟁 해결 절차 또는 추가 자원 그리고/또는 권리 옹호처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무숙자 교육 프로그램에 (213) 202-7581로 연락하시오.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

교육구는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ITI)을 103 개교에 시행하고 있다. 귀하의 학교가 현재 이런 결의안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 부서에 (213) 241-5532로 연락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도구를 제공하여, 교육용 테크놀로지를 갖추어 학생들이 커먼 코어 학습기준, 즉 창의력과 혁신성을 장려하는 21세기 기술에 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필요한 기술과 능숙도를 갖추도록 학교를 지원하여, 교육용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학업을 향상시키고 깊이있는 배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중요한 안전세척, 관행 및 절차는 학교와 프로젝트 전역에 시행되어, 학생의 신체적 및 디지털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디지털 시민의식은 지속적인 학습지도 과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로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친다. 학생 디지털 안전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http://achieve.lausd.net/iti>을 검색하시오.

부모와 보호자는 이런 노력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구, 학습지도 테크놀로지 결의안, 학교는 부모들과 함께 공조하여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의 신체적 안전, 온라인 안전, 디지털 시민의식 그리고 교육용 테크놀로지의 학습지도 목표 관련된 정보와 함께 부모의 역할을 높이고자 한다.

해충 종합관리 프로그램

1999년 3월, 교육위는 제조 기술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살충제 및 제초제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로 작성한 수정된 살충제 종합 관리(IPM) 방침을 승인했다. 인체, 환경,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해충 문제를 가장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교육구의 목표이다. 아래에 설명된 IPM 방침에 의거하여, 장기적인 예방에 주력하며 적절한 살충법을 선택할 때 비-화학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살충제나 제초제를 사용하기 전에 기계적인 살충법(예: glue traps), 축출 살충법(문예 방충방 설치, 구멍이나 틈을 메운다)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 보건 공직자, 의사, 두명의 부모, 기타 일반인, 총 15명 회원으로 구성된 해충관리팀(Pest Management Team)과 교육구 직원은 본 방침의 시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위험률이 적은 살충제와 제초제를 승인하는 일도 이에 포함된다.

살충제/제초제는 IPM에 의해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살충제의 함유물, 사용 유의사항, 위험률이 적은 살충법들을 세밀히 검토한 후에 승인된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교육구의 공인된 해충 관리 기술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교직원, 일반계약자, 학생, 부모는 살충제/제초제를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교육구는 IPM 프로그램 요약 내용과 목표 그리고 IPM 방침서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고용인 및 학생들에게 살충제 사용을 통지할 것이다. 통지서 요청서와 현행 IPM 팀-공인 살충제 목록은 본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 정보는 해당 학교의 메인오피스에서 받아볼 수 있다:

- IPM 팀 공인 살충제 목록
- 해당 학교에서 IPM의 활동을 적은 기록
- 살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이를 72시간내에 통지받기를 원한다는 통지 요청서(Request for Notification)에 부모 서명 (IPM 조정인, 독립 IPM 전문인이 긴급상황이라고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

통지서에는 다음의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제품명, 활성요소, 제거 대상 해충, 살충제 사용일자, 살충제의 독성을 나타내는 기호,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는 연락처와 전화번호, 학교 사무실에서 추가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내용. 자녀가 살충제에 노출되면 자녀의 건강 그리고/또는 행동에 지장을 주거나 살충제가 뿌려질 때마다 통지받기를 원하는 부모나 보호자들은 통지 요청서를 통해 이를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IPM 팀이 승인하지 않은 살충제를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고문을 최소 72시간내 그리고 해당 살충제의 효능이 지속되는 시간 절반의 5배되는 시간내에 눈에 잘 띄는 주변에 붙여 놓는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긴급상황에서는 살충제를 뿌림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공고문도 붙인다. IPM 프로그램 및 방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는 교육구 관리 및 운영부에 (213) 241-0352로 연락하시오. 해당 정보는 www.laschools.org의 "Links"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다. IPM의 학부모 대표 자리가 공식일 경우, IPM 위원에 관심있는 학부모나 보호자들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한다.

방침 설명서: 해충 종합관리(IPM)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방침이다. 본 프로그램의 전체 내용은 연방법, 주법, 규제법과 카운티 조례를 의거한 것이다. 모든 교육구의 방침은 본 IPM 방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살충제는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협하며 특히 아동들에게 더 위협하다. 살충제는 인체에 나쁜 영향 즉 암, 신경 손상, 기형아, 유전자 변경, 생식기관 관련 유해, 면역기관 장애, 내분비선 파괴, 독극성의 원인이 된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양호한 교육환경과 학교 건물과 부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 해충은 규제될 것이다. 살충제는 외관상의 미적인 면만을 위한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 교직원 및 환경의 안전과 건강을 더 우선으로 둘 것이다. 더불어, 인체, 환경 및 재산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은 살충법으로 해충을 규제하는 것이 교육구의 목표이다. 교육구 IPM 방침에 의하여, 장기적인 예방에 주력하며 적절한 살충법을 선택할 때 비-화학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교육구는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화학 살충법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방 원칙"이 교육구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원칙적으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살충제는 없다, 그리고 살충제 제조 회사는 자사 제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부담시키기 보다는 자사 제품이 상기에 나열한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현실점에서 예방원칙을 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향후 수십년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 방침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구는 이런 것을 가능케하는 검증된 과학자료를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을 약속한다.

인터넷 사용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교육구 컴퓨터 네트워크(LAUSDnet)을 통하여 인터넷 접속 및 이메일 사용할 수 있다. 교육구 웹사이트는 <http://www.lausd.net>이다. LAUSD 학생이나 직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우 LAUSD의 책임감있는 사용 규칙(RAUP)에 의해 규제되며 이런 내용은 교육구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a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LAUSDnet를 통한 인터넷 사용 및 이메일 구좌를 포함한 교육구 네트워크 자원 사용은 특전이지 권리는 아니다. 학생증 번호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현재 고용인 번호를 소지한 LAUSD 직원들 그리고 교육구에 의해 채용된 계약인들은 LAUSDnet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과 교육구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는 취지는 정규 수업 또는 업무 활동, 교육적 리서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학생은 LAUSDnet 이메일 구좌를 가질 수 있는데, 이는 학생이 등록된 학교의 교사 또는 행정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육구 시설물에 인터넷을 접속하거나, 교육구 시설물과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지만 교육구 시설물과 접속된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에 **학생 서명과 학부모 허락서**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연방 아동 인터넷 보호법(Federal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CIPA)을 준수한다. 특히 CIPA는 교육구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A) 음용한 내용, (B) 아동 포르노, 또는 (C) 미성년에게 해로운 내용. 차단용 테크놀로지가 백퍼센트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학교나 집에서 자녀의 인터넷 접속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이 없다. 인터넷을 제공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21세기의 아동 보호 법에 의거하여 교육한다. 가정에서 인터넷을 책임감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한다. 교육구 방침 공문 BUL-5181.2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음악, 사진 그리고/또는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는 학생은 모든 해당 저작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에 더불어, 소프트웨어 또는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그 적합성을 세심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음악, 사진 그리고/또는 비디오,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은 개인용이 아니라 교육구용으로만 다운로드해야 하며 개인 용도로 다운로드할 수 없다. 개인적 다운로드를 특히 저작권으로 보호된 LAUSD의 R AUP에 저촉되는 자료인 경우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승인되지 않거나 그리고/또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LAUSDnet 사용자들은 사생활 비밀 보장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교육구는 학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좌 감사 및 로그인 행위를 모니터링할 권리를 보유한다. 인터넷은 공공 네트워크이며 이 속에 있는 이메일 또는 기타 통신 내용은 사적 내용이 아니다. LAUSDnet 시스템 운영자들은 모든 사용자의 주소 및 자료, 이메일, 웹페이지, 그리고 시스템 서버(server)에 저장된 기타 자료를 접할 수 있다. 시, 주법 및 연방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교육구의 목표, 목적, 방침 및 교육적 사명과 불일치하는 자료를 사용자가 먼저 접속을 시도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생은 온라인상의 활동을 실제 인간관계의 행위처럼 생각해야 한다. 타인의 계좌를 위협하게 하거나 비허용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는 온라인 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는 인종, 종교, 신념, 피부색, 국적, 조상, 신체 장애, 성별, 성 및 성적 성향 또는 기타 이유로 타인을 협박, 조롱, 명예 훼손, 비하할 목적으로 LAUSDnet를 접속할 수 없다. 더불어, 인터넷과 전자 메일을 포함한 교육구 네트워크와 전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때, 이를 왕따 또는 타인이나 타인들을 위해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로 이용할 수 없다. 이용자는: 이메일이나 기타 게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작성한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견해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LAUSD의 RAUP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넷/이메일 특권을 상실할 수 있고, 더불어 징계/법적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학교 대항 운동경기

LAUSD 학교 대항 운동부 (Interscholastic Athletics Office)는 중학교 교내 프로그램(Middle School Intramural Program)뿐 아니라 고교 운동 프로그램도 주관한다. 이 두개 프로그램 모두 학업과 운동사이의 결합을 장려하고, 스포츠 참여 가치를 육성하도록 고안되었다. 더불어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는 모든 고교생에게 제공되며, 이는 대부분의 스펀 학교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싱글-사이트 매그넷 학교도 포함된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학교 대항 연맹 및 LAUSD 학교 대항 운동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자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참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학생은 반드시 내신 성적을 최소 2.0으로 유지하고, 매년 교육구의 현행 방침에 준하는 공인 캘리포니아 의료 제공자가 실시한 종합 신체 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그리고 이머전시 카드를 제출해야만 한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보험 증서도 제출해야만 한다. 운동 학생은 스테로이드 사용 금지서, 품행 서식서, 헤이징 및 왕따 금지서, 비시즌 책임부담 면제서, 운동 보험 증서, 헤이징 및 불링, 타박상 정보 서식서 그리고 언론 공개서에도 반드시 서명해야만 한다. 부모는 위험 경고 확인서(Acknowledgement of Risk Warning)와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전학 방침에 준하여, 9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전학하는 학생은 이런 운동 자격을 새학교로 가져갈 수도 있다. 전학 당시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운동선수는 전학할 경우, 전학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하며,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않아도 모든 전학에는 전학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고교 운동 프로그램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추가 정보는 CIF 로스앤젤레스 시 세션 웹사이트 www.cif-la.org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학교 대항 운동 프로그램 및 중학교 교내 대항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학교 대항 운동부에 213-241-5847로 연락하시오.

미성년자 감독/캠프 수감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학생

2014년 9월 30일자로 수정된 교육법 제 48645.5항에 의거하여, 학생이 미성년자 사법 제도에 접촉되었다는 것만을 근거로 공립학교 등록이나 재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공립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부는 학생이 이전에 재학했던 공립학교, 미성년자 법정 학교 또는 비공립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의 전체 또는 일부 학점을 인정해야 한다. 의무교육 출석을 면제받지 않은 한, 미성년자 사법 시설, 기타 법령으로 배정된 곳으로부터 재입학하는 학생은 기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며 그리고 즉각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더불어, 하원의원 법안 2276을 통해 교육법 48645.5, 49069.5 및 48648 항이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카운티 교육부와 카운티 감찰국은 합동 전환 플래닝 방침을 설정하여, 미성년자 법정 학교로부터 해당 교육 기관으로 등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한다. LAUSD,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 (LACOE)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호감찰국은 서로 공조하여, 교육구에 재-입학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학교 배정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이런 절차와 단계를 개발한다. 더불어 모든 LAUSD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프터케어 케이스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원의원 법안 216에 의거하여, 포스터케어 학생들에게는 특정 졸업 조건이 면제된다: 포스터케어 학생은 복지 및 기관법 제 309 항에 의거하여 자신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포스터케어에 있는 학생을 말하며, 신청서의복지 및 기관법 제 300 항 또는 제 602 항 하에 접수된대상이거나, 자신의 집으로부터 떠났고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 300 항 또는 제 602 항 하에 접수된 신청서의 대상을 말한다. 추가 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생 서비스 미성년자 감독/캠프 재입학 프로그램에 (213) 241-3844으로 연락하시오.

학생 기록의 보관 장소

대부분의 학생 기록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초등학교가 보관하는 학생 기록은 교장이 기록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메인 오피스에 보관하는 것이 상례이다. 중고교에서는 대개의 경우 해당 정보를 아래 명시한 바와 같이 보관한다.

1. 학생의 보건 관련 교육 기록은 양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양호실에 보관된다.
2. 성적, 상담 또는 보충 지도와 관련된 교육 기록은 학생 상담 서비스 담당 교감이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상담 부서에 보관한다.
3. 출석 관련 교육 기록은 학생 보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교감이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출석 부서에 보관한다.
4. 운동 활동 관련 교육 기록은 체육 교육 지도 교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체육 교육 부서에 보관한다.
5. 수업 활동과 관련된 교육 기록은 담당 교사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해당 교실에 보관한다.
6. 특수교육 IEP는 학생 종합 기록부(student's cumulative record folder)에 보관된다.

징계처분, 특수 교육, 심리 기록과 같은 학생 기록의 일부는 교육 서비스 센터, 지원부서 또는 중앙 교육구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뉴스 미디어 공개

때때로, 기자는 운동 경기, 학교 집회, 특별 프로그램 그리고 기타 캠퍼스 활동을 보도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 이에 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동의가 요구된다. 학교는 대개의 경우 9월에 자녀가 신문, 라디오 또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에 의해 인터뷰하는 것을 허용하는 허락서를 보낸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지 않을 경우, 이 서식서는 보관되어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에 회부된다.

이런 서식서를 통해, 기자는 아동의 사진이나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때로는, 배경으로 영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가족과 학교에게 자랑이 되는 멋진 촬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이런 면제서를 통해 학교는 좋은 뉴스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기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올릴 수 있다.

서식서에 서명했다 하여도, 학생은 인터뷰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경우, 학생은 담임 교사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면 된다. 서명된 서식서는 교정에 있는 학생들만 포함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학생이 교정 밖으로 나가면, 그 서명된 합의서는 권한이 없어지고 학생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학생은 미디어에 발언하고 싶으면, 부모의 허락없이도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자는 초등생, 중학생에게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나이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청받을 수 있다. 이런 한 사유로,자녀와 함께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결정이 더 좋은지에 대해 미리 사전에 대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차별 금지 성명서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불법 차별행위와 괴롭히는 행위, 위협과 왕따가 없는 직업 및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교육구는 상당한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각 개인의 연령, 조상, 피부색, 장애(정신 장애 및 신체 장애),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결혼 여부, 국적, 인종, 종교(종교적 편 의 포함), 성(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임신, 분만, 또는 이와 관련된 의료 상태가 포함됨), 성적 성향을 근거로 또는 이런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그리고 형법 제 422.5항, 교육법 제 220항에 제시된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위협 그리고 왕따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은 합법적인 비 차별 사유없이 교육적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맥락속에서 보호된 영역을 토대로 다른 처우를 하며, 그리고 서비스, 활동 또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특권으로부터 참여나 혜택을 받는 개인의 능력을 방해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J

L

N

괴롭힘 행위는 다음의 경우 발생한다: (1) 표적 당사자는 보호된 영역에 관련하여 원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다; (2) 괴롭힘 행위는 표적인에게 주관적으로 공격적이며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연령과 특성을 지닌 합리적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3) 괴롭힘 행위는 교육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 기회에 대한 참여 또는 혜택으로부터 방해받거나 제약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고, 침투적이며 지속적이다.

괴롭히는 행위(harassment)는 위에 명시된 보호받는 분류에 속하는 일종의 불법적인 차별이며 본 교육구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괴롭히는 행위는 학생/고용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위협적이거나 학대적인 행위이며,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행위의 가해자인 학생이나 고용인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괴롭히는 행위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며, 언어 행위 및 육, 시각적이거나 글로 제시한 내용,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창피를 주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보호된 영역(위에 언급된 상황들)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학교 직원은 중재가 안전할 경우 이를 즉시 조치해야만 한다. 학교 또는 해당 부서가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 행위를 통지받는 즉시, 그리고 이런 행위가 교직원, 학생 또는 제 삼자에 의해 행해진 것에 상관없이, 즉각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사하거나 발생한 상황을 결정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그 행위를 종료시키고 공격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치들은 불평 제기가 없다고 하여도 그리고 학교나 부서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취해져야 한다.

본 비차별 방침은 교육구의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입학이나 기회, 또는 처우나 고용에 적용되며, 이에는 작업 교육도 포함된다. 이 동성 장애를 지닌 학생의 부모/보호자들은 교통편이 비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LAUSD 또는 학교 후원 현장 학습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통편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다. 영어력 부족은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 접근 또는 참여에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본 비차별 방침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감 관할권 소속의 모든 학교 또는 부서 내에서 행해지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포함된다.

여러 다른 형태의 불법적인 차별/괴롭히는 행위, 부적절한 행위 그리고/또는 증오로 인한 사건/범죄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기타 교육구 방침에 명시되어 있고, 학교 및 사무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교육적인 서비스 및 기회 제공시 불법적인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런 모든 방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본 교육구의 의도이다. 본 교육구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 또는 고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위에 나열한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고소장 제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학교 행정관, 학교 타이틀IX/왕따 고소 매니저 또는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 (213) 241-7682로 연락하십시오.

패밀리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 (FERPA) 통지서

패밀리 교육적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법(FERPA)에 의거하여, 부모와 18세 이상의 학생 (“유자격 학생”)은 해당 학생의 교육 기록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보유한다. 다음의 권리에 해당된다:

1. 학교가 요청을 받은 후 45 일 이내에 학생의 교육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
 -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은 학교 교장 (또는 담당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어떤 기록을 조사하고 싶은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당 교직원은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여 이를 통지할 것이다.
2.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이 학생 교육 기록이 오류, 오도 또는 FERPA 하에 학생 사생활 보호권을 저촉했을 때 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학교에 기록 수정을 요청하는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은 어떤 기록을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장(또는 담당 교직원)에게 보낸다. 만약 학교가 기부모나 유자격 학생이 요청한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학교는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고 수정 요청과 관련된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고지할 것이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청문회 권리를 통지할 때 해당 부모 또는 유자격 학생에게 제공할 것이다. 본 안내서의 “학생 기록에 대한 이의 제기” 부분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3. 학교가 신원 판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PII)를 공개하기 전에, 서면 동의를 제공할 권리, 단지 FERPA 범위가 동의 없는 공개를 허락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동의 없는 공개를 허용하는 하나의 예외는, 합법적인 교육적 관심을 지닌 교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교직원은 행정관, 슈퍼바이저, 교사, 또는 지원 직원 (간장 또는 의료 직원 및 법 집행 부 직원) 또는 학교 위원회 관련인으로 학교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이다. 더불어, 교직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학교가 자체 직원 처럼 학습지도 서비스를 수행하며 그리고 학생 기록의 PII를 이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학교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외부 계약인, 이에는 변화사, 감정사, 의료 자문인 또는 치료사가 포함된다; 또는 공식 위원회에 멤버로 자원한 부모 또는 학생, 즉 훈육 또는 항소 위원회; 또는 교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자원한 부모, 학생 또는 기타 자원봉사자. 교직원은 담당 전문성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적 기록이 공식으로 필요한 경우 합법적 교육적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나 교육구가 FERPA 필수조건 준수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건을 미 문교부에 고소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FERPA를 실시하는 부서의 명칭과 주소이다:

Family Policy Compliance Offi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400 Maryland Avenue, SW
Washington, DC 20202

FERPA는 학생의 교육적 기록을, 부모나 유자격 학생의 동의없이, 만약 그 공개가 FERPA 법규의 제 §99.31항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PII 공개를 허용한다. 교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법정 명령 또는 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과 관련된 공개, 주소록 정보 공개 그리고 FERPA 법규 제 §99.32 하의 부모나 유자격 학생에게 공개하는 경우, 학교는 이런 기록을 공개해야만 한다. 부모와 유자격 학생은 공개된 기록을 조사하고 검토할 권리가 있다. 학교는 부모나 유자격 학생의 사전 서면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기록의 PII 부분을 공개할 수 없다.

-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 기관이나 단체로서 학교가 합법적 교육적 관심이 있는 곳이라고 결정한 사람들. 계약인, 컨설턴트, 자원봉사자 또는

§99.31(a)(1)(i)(B)(1) - (a)(1)(i)(B)(2)에 명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학교가 외부로부터 기관의 서비스나 기능을 요청한 제 삼자가 포함된다. [§99.31(a)(1)]

- 타학교, 학교 제도, 또는 학생이 등록을 추구하는 고등교육 기관, 또는 학생이 이미 등록한 기관으로서 이는 이런 공개가 학생의 등록이나 전학과 관련된 취지에 부합하고, §99.34의 필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99.31(a)(2)]
- 공인 대변인: 미 회계 감사원장, 미 검찰청, 미 문교부 장관, 또는 주 및 관할 교육 기관, 부모나 유자격 학생이 해당되는 주 (SEA) 교육기관. 이런 조항 하의 공개는, §99.35 필수조건에 대상이며, 연방- 또는 주- 지원 교육 프로그램의 감사나 심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 법적 필수조건의 집행이나 준수를 위한 것이다. 이런 기관들은 PII를 외부 기관에 추가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감사, 평가 또는 그들을 업무를 대리하는 활동을 준수하는 공인된 대변인으로서 지정된 기관들이다. [§§99.31(a)(3) and 99.35]
- 학비 보조과 관계된 경우: 학생이 신청한 학비 보조나 이미 받은 지원으로서 만약 그 정보가 지원 자격을 결정하거나 지원 액수, 지원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또는 이런 지원의 조건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99.31(a)(4)]
- 주 및 관할 공직원 또는 기관으로서 주 사법 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보고받거나 공개받도록 허용된 경우로서, 미성년 사법 제도 그리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 그 기록은 공개 대상이 된다. [§99.31(a)(5)]
- 학교를 위해, 학교를 대신하여 다음을 위해 연구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a) 예측된 검사를 개발, 타당성 검증 및 실시하기 위해; (b)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또는 (c) 학습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99.31(a)(6)]
- 공인 기관으로서 공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99.31(a)(7)]
- 학생이 IRS 세금 보고서 피부양자일 경우 유자격 학생의 부모에게 공개됨 [§99.31(a)(8)], 법정 명령 또는 법적으로 발부된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99.31(a)(9)]
- 건강, 또는 안전 비상국과 관련된 해당 공직원 §99.36. [§99.31(a)(10)]
- §99.37 하에 학교가 “주소록 정보”로 지정한 정보. [§99.31(a)(11)]

더불어, 공개되어도 위해성이 없거나 사생활 침해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주소록 정보는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도 외부 기관에 공개될 수 있다. 주소록 정보 공개의 주된 취지는 학교나 교육구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적 기록을 특정 학교 인쇄물에 포함시키기 위함이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연극 공연에서 자녀의 역할을 보여주는 공연 안내장
- 연례 앨범
- 성적 우수자 또는 수상자 명단; 그리고
- 졸업 프로그램

외부 기관은 졸업 반지나 앨범을 제작하는 회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는것은 아니다. 더불어, 두 개의 연방법에 의거하여, (ESEA)에 의해 수정된 1965년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법 하에 지원금을 받는 관할 교육 기관(LEAs)은 요청이 있을 경우 군대 신병 모집관에게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명단, 단지 부모가 LEA에게 학생의 정보가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고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해당 학교나 교육구가 아래 주소록 정보로부터 지정된 모든 종류의 정보 또는 일부를 부모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부모는 반드시 본 안내서에 있는 정보 공개서를 통해 학교에 통지해야만 한다.

정보 공개서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를 보류하라는 서면 요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는, 학생 관련 주소록 정보의 다음 중 어떠한 내용도 그리고 모든 내용도 지정된 수령인에게 공개될 수 있다.

-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출석 일자 (예: 학년도 또는 학기)
- 현재 학교 및 최근에 재학한 학교(들)
- 학위 및 수상 경력

교육구에 의해 지정된 주소록 정보 수령인은 정보 공개서에 실려있다.

더불어,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73 항에 의거하여, 부모/보호자 또는 유자격 학생은 반드시 McKinney-Vento 무숙자 교육 지원법 하에 유자격 학생에게 주소록 공개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학생과 관련된 주소록 정보 동의서가 없을 경우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양호사-패밀리 파트너쉽

양호사-패밀리 파트너쉽은 무료이며 처음으로 임신한 학생들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첫 아이를 임신 한 십대/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자격 양호사(정식 간호사)가 임신 기간동안 가정 방문을 하고 그 아이가 2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다. 간호사는 임신한/자녀를 양육하는 십대 학생에게 건강한 임신 그리고 건강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프로그램은 십대학생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교육적 목표를 도와준다.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첫 아기를 임신한 십대 학생은 임신 초기에 가급적 빨리 등록하기를 권한다. 고교 선택 학점이 유자격LAUSD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213) 202-7534으로 연락하십시오.

기회 전학

기회 전학(OTs)은 학교나 교육구가 선도적으로 추천한 신중한 계획화에 이루어진 전학으로서, 중재 및 행동 교정을 위해 LAUSD 산하 타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다. 이전의 중재 노력이 올바른 행동 교정에 실패했을 때 또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계속 다닐 경우 타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노출시킬 경우, 비행 교정을 위한 대체적인 방안으로 발부된다. OT의 취지는 학업의 중단되는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학부모/보호자 연례 콘돌 제공 프로그램 관련 통지서

HIV/AIDS와 성병은 우리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 있는 질병이다. 공공 보건 통계 자료 및 보고에 의하면 점점 더 많은 수의 우리 십대 청소년들이 이런



질병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 본 교육구는 이런 질병 예방을 백퍼센트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행위 금욕을 강조하고 있지만, 본 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다 금욕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도 인식하며, 따라서 HIV/에이즈 바이러스 성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올바른 콘돔 사용을 가르쳐야 한다고 인식한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서, 의료 및 공공 보건당국과 공조하여, 교육위원회는 1992년에 부모가 허락 거절을 학교 양호사에게 서면으로 연락하지 않는 한, 학생에게 콘돔을 제공할 수 있는 방침을 제정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 보건국은 부모나 보호자인 귀하가 콘돔 제공 거절 내용을 학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한, 콘돔을 요청하는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 콘돔 제공과 관련하여 본 교육구는 어떠한 책임도 수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학교 콘돔 제공 프로그램(Condom Availability Program)으로부터 콘돔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원하지 않는 학부모/보호자들은 이런 내용을 언제든지 학교 양호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오.

학부모, 커뮤니티, 및 학생 서비스-학부모 참여

주 교육 위원회 방침 #89-01

학부모 참여는 효율적인 학교 경험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 교육에 참여하면 학력이 향상된다는 점이 확실히 나타났다.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경우, 자녀들의 성취도는 더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 학교도 더 성공한다.

중요한 사실:

1. 가족은 가장 중요한 교육 환경이다.
2. 자녀 교육에 부모가 참여하면 학력이 향상된다.
3. 부모 참여는 잘 계획하여 종합적으로 장기간 지원될 때 가장 효과적이다.
4. 부모의 참여로 인한 혜택은 모든 학년에 나타나며, 조기 유아 교육이나 초등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5.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만 돕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커뮤니티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모는 반드시 학교에 전반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6. 가정의 소득 또는 교육 수준 보다는 부모의 자녀 교육 참여 범위가 학생의 성공에 더 중요하다.
7. 학교와 가정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파트너 관계여야 하며, 가정과 학교는 자녀가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참여 방침

로스앤젤레스통합 교육구는 학교와 부모가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 성공적인 학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학부모* 방침은 모든 학교와 교육구 업무 수행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더불어, 2001년 나고자 없는 교육법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은 모든 학교는 반드시 학교 자율위원회(SSC)를 결성해야만 한다. 학부모는 SSC의 멤버로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별 자금 사용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 참여 플랜을 조인하고 결정하는데 반드시 개입해야만 한다. 본 교육구는 타이틀 I 학부모 참여 방침을 설정했고, 이를 통해 각 학교는 필요한 경우 학교 타이틀 I 학부모 참여 방침을 매년 검토하고 수정한다. 학부모는 <http://families.lausd.net/> 를 검색하여 LAUSD 타이틀 I 학부모 참여 방침과 비-타이틀 I 학교에 대해 알아보거나 학부모 참여 방침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분류된 영어 능숙생(RFEP)을 포함시키지 않은 영어 학습생(EL)이 스물 한 명 이상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영어 학습생 자문 위원회(ELAC)를 결성해야만 한다.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학교 경험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은 LAUSD의 여러 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에는 학교가 부모를 파트너로 얼마나 잘 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LAUSD의 모든 학교는 학부모 센터를 운영하거나 학부모 지원과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장소를 제공할 것을 권장받는다. 학부모 참여를 위한 학교 목표에는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모든 학년의 부모들이 다양한 역할과 활동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한다: 다음의 이런 목표들이다:

- 부모를 동등한 파트너로 환영한다
-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모의 염려와 불평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 학부모 참여 관련 의무조항을 잘 준수한다..

학교의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은 학교 차원에서 작성되며, 학교와 학부모 센터 직원은 학부모, 커뮤니티 및 학생 서비스(PCSS)부서와 각 교육 서비스 센터의 커뮤니티 개입 유니트로부터 지원과 지침을 제공받는다. 영어 학습생, 이주자 학생 그리고 장애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들은 학교 중심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장받는다. 요청을 받는 즉시, 학교는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기타 특별 조치가 필요한 부모에게 특별 편의조치를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특수교육 부서는 장애학생 부모에게 자녀의 교육과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자원을 제공한다. 추가 정보를 원한다면 (213) 241-6701으로 연락하시오.

학부모 권리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1101에 의하면, 공립학교 재학생의 부모/보호자들은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와 협조하고 상호 존중하는 파트너 관계로 노력할 권리가 있으며 그리고 사전에 학교 규율과 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LAUSD 학부모 권리 및 의무 장전은 학생의 성공에 필요한 부모의 파트너십 역할을 명시한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부모 결의안*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더불어 자녀의 학업 성공을 옹호하는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확인시키는 내용이다.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권리 및 의무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파트너이다. 이 명제는 2010년 12월 교육위원회가 수용한 결의안으로서 학생의 성공을 위해서 그 가정의 강점과 자산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를 자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평생의 교사로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가정과 학교는 학생 성공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파트너십을 공약한다:

- 학생 성취도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유지한다
- 모든 학생에게 대학 진학 및 커리어를 준비시킨다
- 건설적인 대화를 늘리고 공조체계를 확고히 한다
- 상호 존경과 서로 돕는다.

학부모는 다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 자녀의 학업에 노력을 기울이며 대학 진학과 커리어를 준비시켜주는 무상교육
- 각 가정이 지닌 자산의 가치를 두고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모를 환영하는 학교 분위기
- 학교의 기대사항, 교육적 프로그램,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정보
- 학교 성적표는 자녀의 학교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 자녀의 학급을 참관하고 그리고 교직원과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기회들
- 자녀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튜터링 서비스와 기타 학습 기회
- 가급적 자녀에게 최상의 학교/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
- 교직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번역/통역 서비스에 대한 권리

학부모는 다음에 대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

- 읽기/쓰기, 높은 학업 성취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격려한다
- 자녀가 매일, 정시에 학교에 출석하여 배움에 대한 좋은 태도로 수업을 준비한다
- 자녀의 학업 진전도를 모니터링하고 지도한다
- 자녀의 교육에 대해 교사와 기타 교직원들과 상의한다
- 회의와 교육 활동에 참석하여 자녀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 연례 학교 경험 설문지를 통해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한다
- 학교가 자녀에 대해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자녀의 교육을 옹호한다.

부모의 알 권리

낙오자 없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NCLB) 법규에 의하면,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필수 학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정보가 포함된다:

- 교사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
- 교사의 대학 학위(들) 그리고 전공(들)

부모는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교사의 전문 자격 내용에 대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학교는 NCLB 조건에 미달되는 교사가 자녀의 필수 학과목을 연속 4주 이상 가르치거나 배정된 경우, 부모에게 적정기간 내에 이를 통지해야만 한다.

학교 자원봉사 프로그램 (SVP)

학교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사와 기타 직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학교를 돕는다. 학부모, 커뮤니티 및 학생 서비스 부서와 각 ESC의 학부모 및 커뮤니티 개입 팀은 자원봉사자 서류 처리를 하며, 학교 자원봉사자의 명단과 자료를 관리하고, 학부모 센터 직원을 통해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자원봉사 페어 그리고 학부모 센터와 스텝을 통해 받는다. 학교 자원봉사자들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리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녕을 위해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부모는 PCS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해당 학교에 연락하거나 PCSS 웹사이트 www.achieve.lausd.net/families를 검색하시오.

등록 허가증 (PERMIT) 및 전학

교육구는 학생과 그 가정의 필요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인종 차별 금지, 학생 수용력과 비용은 등록 허가증을 시행할 때 불가피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들이다. 교장 및 각 교육 서비스 센터 담당 행정관은 등록 허가증 정보를 학생, 학부모 및 커뮤니티에게 제공할 것이다. 등록 허가를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 곳에 신청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등록 허가를 거절하는 학교나 교육구는 부모/보호자에게 항소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허위 정보나 등록 허가 자격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등록 허가는 즉각적으로 거절되거나 취소될 것이다.

등록 허가 신청서 절차 정보는 <http://studentpermits.lausd.net>을 검색하거나 학생 서비스국의 등록허가 및 학생 전학 부서에 (213) 241-5255로 연락하도록 한다.

캘리포니아 개방 등록법

캘리포니아 주 개방 등록법 SBX5 4(Romero)에 의거하여, 해당 학년도마다 1,000 개의 “학력 부진” 학교 명단이 작성된다. 이런 1,000 개의 캘리포니아 개방 등록 학교들 중 한 학교에 해당되는 부모/보호자는 교육구 내 타학교 또는 타교육구의 API 더 높은 학교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 학년도를 위해 11월부터 1월까지이다. 캘리포니아 개방 등록법 SBX5 4(Romero) 그리고 학생 전학 선택권에 대한 정보는 <http://apply.lausd.net> 웹사이트 학부모/패밀리에서 찾을 수 있다.

타교육구 사이의 등록 허가증

학생 서비스 부서의 등록 허가 및 학생 전학부는 타교육구 사이의 퍼밋 요청과 이의 항소건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있다. 등록허가증은 LAUSD에서 타교육구로 또는 타교육구에서 LAUSD로 전학하기 위한 학생에게 발행될 수 있다. 타교육구 등록 허가는 반드시 학생 서비스 부서의 등록허가 및 학생 전학부를 통해 처리 되어야만 한다. 교직원들은 타교육구 등록허가증을 승인,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없다. LAUSD 퍼밋 신청서는 <http://studentpermits.lausd.net>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만 한다. 신청서는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서만 접수되어야만 한다. 다음 학년도를 위한 지속적인(ONGOING) 타교육구 사이의 퍼밋 신청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이 신청기간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퍼밋은 학부모의 직장을 통한 지속적인 퍼밋 신청서이다. 다음 학년도를 위한 타교육구에서 본 교육구로(INCOMING) 들어오거나 하는 퍼밋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시작된다. 각 신청서는 개별적으로 심의될 것이다. 본 교육구에서 타교육구로 가고자하는(OUTGOING) 퍼밋 신청서는 전자상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며; 서류 신청서는 받지 않을 것이다.

본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 OUTGOING 타교육구 퍼밋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 부모의 직장
- 특별 종합 프로그램
- 10-12학년 고교생이 그 학교에서 계속 재학하기 위해
- 형제자매
- 예외 조항

본 교육구는 다음의 경우 INCOMING 타교육구 퍼밋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 차일드케어
- 부모의 직장
- 등록을 지속하기 위해
- 12학년의 경우
- 특별 프로그램
- 형제자매
- 예외 조항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는 (LAUSD 산하의 학교에서 타학교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거주지 학교와 지방학교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는 해당 ESC (교육 서비스 센터) 통해 항소할 수 있다.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는 LAUSD 거주지 학교로부터 다른 LAUSD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한다.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 신청서와 절차서는 LAUSD 학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전학은 부모/보호자가 이런 절차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전학 허가는 다음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때 발부될 수 있다:

- 차일드케어
- 부모의 직장
-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다니기 위해
- 12학년생
- 안전 및 보호 차원
- 특별 프로그램
- 형제자매
- 예외 조항

교육구 내의 등록허가는 신청한 학생이 자격이 있고, 주거지 학교와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행정관이 모두 이런 전학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체력 검사

주 법규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모든 5, 7, 9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체력 검사(PFT)를 실시해야만 한다. 주 정부에서 지정한 PFT는 피트니스그램(FITNESSGRAM®)이다. FITNESSGRAM®은 건강-관련 체력을 평가하고, 학생이 평생동안 정기적인 신체 활동을 습관화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이다.

종합 피트니스그램 테스트는 다음 영역에 대한 학생의 능력을 측정한다:

1. 심폐 용량 즉 에어로빅 용량
2. 신체 조직
3. 근력, 지구력 및 유연성

교사 및 행정관은 체력 검사에 해당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학습지도와 적절한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체력검사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교는 해당 학년도 동안, 정기 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연습을 제공할 것을 추천한다. 2월부터 5월 사이에 체력검사가 실시된다. 부모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신체 운동에 참여하고 적절한 영양 상태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모든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2년동안 체육 수업을 받아야만 한다 (9학년과 10학년). 2008년 고교 신입생들은 FITNESSGRAM을 “통과”해야만 2년(11학년과 12학년)의 고교 체육 수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학년이였다. “통과” 점수는 6개의 영역들 중 5개에서 건강 체력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9학년과 10학년에서 건강 체력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학생은 FITNESSGRAM을 “통과”하거나 또는 졸업할 때까지 체육 수업을 계속해야만 할 것이다.

FITNESSGRAM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시오. 추가 정보는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http://www.cde.ca.gov/ta/tg/pt/>.

체력 검사 날짜는 www.lausd.net에서 알아볼 수 있다. “Families” 클릭하여 “Student Testing and Assessment”를 검색하도록 한다. 자녀 학교의 체력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교장에게 연락하시오.

급전적 배상/학부모 채무



민법 제 1714.01조에 의거하여, 양육권 및 통제권이 있는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의 고의적인 비행으로 인해 초래된 타인의 재산 손상에 대해 공동 그리고 개별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인 비행으로 초래된 2만5천불이 초과되지 않은 손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8904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가 대여한 물품, 비상환 물품, 또는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손상한 물품에 대하여 해당 교육구 또는 사립 학교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가 피해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해당 물품을 되돌려 줄 때까지, 해당 학생의 성적, 졸업장, 또는 성적 증명서를 보류하는 방침을 관할 학교가 채택하도록 법은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 배상을 추구하는 것이 본 교육구의 방침이다: 교육구 또는 학교 직원 소유 부동산, 동산에 고의적으로 칼로 자르거나, 외관을 손상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되돌려 주지 않거나, 손괴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2만5천불을 초과하지 않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위기 관리 및 보험 서비스실 산하 배상부(Restitution Unit)는 이런 배상권 소추를 담당한다.

이런 통지를 받는 즉시, 부모나 보호자는 그 물건을 되돌려 보내거나 잔여 채무를 지불할 수 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 물건을 돌려보내지 않거나 잔여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배상부서는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소액 청구권을 접수시킬 것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법정 판결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유주-채무인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학교 책무 보고서(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

교육법 제 35256조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학교 책무 보고서(SARC)를 학교별로 매년 발행해야 한다. SARC는 매 학년도마다 2월 1일에 발표된다. 해당 학교는 학교 보고서를 요청받을 경우에 그 사본을 제공하며, www.lausd.net 웹사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

학교-중심 메디칼 서비스

다음의 메디칼 관련 정보는 메디칼이 자격있는 장애학생의 부모를 위한 것이다.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에 의거하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자녀의 IEP에 명시된 모든 의무 서비스를 부모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하지만, LAUSD는 이런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연방 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이로서 LAUSD 학생 전체를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 재정적 능력이 높아진다.

장애학생의 특정 서비스 그리고 전체 학생의 특정 건강 서비스가 현재 메디칼로부터 비용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건강 관련 서비스는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명시된 평가 및 치료(들) 둘다 포함된다: 전문 청력검사, 카운슬링, 양호 서비스, 작업 요법, 물리요법, 언어 교정 및 이런 서비스 관련 교동편. 메디칼 범주는 병원, 재활 센터 및 기타 시설의 제공자들과 동일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학교-중심 제공자들에게 요구한다.

부모가 특수 교육 평가 플랜이나 IEP에 동의 서명하는 것은 즉, 메디칼 유자격 학생의 부모는 LAUSD가 메디칼 해당 서비스 비용을 메디칼로부터 상환 청구서 제출을 허락한 것이다. 청구 빈도는 평가 허락서와 일치하며 그리고/또는 부모가 학생의 IEP에 위임한 메디칼 자금 서비스의 종류와 빈도와 일치한다. 이런 상환 청구서, LAUSD는 학생 기록, 의료 정보 그리고/또는 학생 관련 기타 정보 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 학교-중심 메디칼 비용 상황은 자녀가 기타 장소에서 메디칼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메디칼 비용 최고 제한액이 없다. LAUSD는 학생의 IEP에 명시된 건강 케어 서비스 비용을 가족의 사설 보험에 절대로 청구하지 않는다. 본 교육구는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공립교육을 무상(FAFE)으로 제공해야하는 필수조건과 IDEA를 엄격히 준수한다. 부모가 LAUSD 메디칼 부서로부터 *부모 메디칼 비용 청구 비-위임서(Parent Medi-Cal Non-Authorization to Bill)*를 요청하면, 메디칼 유자격 자녀의 부모는 LAUSD가 자녀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213-241-0558이다. 메디칼 비용 청구 비-위임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특수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에서도 기재되어 있다 (2009년 7월).

아동의 메디칼 자격 기준은 가족의 소득과 장애를 포함한 여러 요소에 근거한다. 메디칼 관련 정보를 원한다면, 무료전화 LAUSD CHAMP 부모 헬스케어 지원번호에 (866)-742-2273으로 전화하시오.

LAUSD 메디칼 상환 및 준수 프로그램은 건강 보험 이전성 및 책무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 본 안내서 마지막에 첨부된 사생활 보호 업무 관련 통지서(Notice of Privacy Practices)를 참고하시오.

학교 경험 설문조사

매년 봄에 실시되는 학교 경험 설문조사를 통해 LAUSD 학교에 대해 해당 관련인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3-12학년생, 학부모와 직원은 설문조사에 답변하며, 해당 학교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분위기인지, 얼마나 협력하고 좋은 학업 환경인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담는다. 설문에 대한 답변들은 적정 시한 내에 학교 커뮤니티에 발표되어 다음 학년도를 위한 개선책에 적용된다. 더불어, 이런 데이터는 각 학교마다 학교 리포트 카드로 매년 한 차례 발표된다.

거주지 학교

6세부터 18세 사이의 사람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풀타임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며, 부모나 보호자의 거주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그리고, 해당 학생에 대한 권위나 책임을 지닌 각 부모, 보호자 또는 기타인은 해당 학생을 공립 풀타임 학교, 컨티뉴에이션 학교 또는 학교 시간과 동일한 풀타임으로 된 클래스에 보내며, 그 학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거주지 소재 학교로 한다. (교육법 제 48200). 가정의 이혼, 법적 별거, 미혼 부모의 자녀의 경우, 해당 학생은 양쪽 부모의 거주지 중 한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중 등록은 엄격히 금지되며, 기록상 거주지는 한곳으로만 할 수 있다[정부 법규 제 244(b)]. 학교는 거주지를 검증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모/보호자가 등록 당시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거주지 증명 진술서가 사용될 것이다. 해당 부모/보호자는 등록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무숙자 학생은 원래 거주하는 구역의 학교에도 다닐 수 있고 또는 무숙자가 되었을 때 다녔던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 특정 상황인 경우, 거주지 학교 이외의 타학교로 전학/타교육구 학교 전학이 허락될 수 있다. 부모는 등록 허가 부서 및 학생 전학부에 (213) 241-5255로 연락하도록 한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은 비장애인이라면 다녔을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다만 장애 학생의 IEP에 기타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다.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은 다음 조건 하에 교육구 학교에 다닐 수 있다:

- 정규 공인 아동 기관 또는 공인 포스터 홈, 복지 및 기관법 하에 패밀리 홈에 배치된 학생.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 또는 양육인들은 배정된 학교에 증빙 서류를 제공한다(DCF에 의해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양육되는 학생 또는 보호 감독 부분을 참고하시오).
- 동반자 업스 무숙자 청소년

- 타교육구 재학이 승인된 학생
- 교육구 구역 내에 거주지가 위치한 친권이 없는 독립 아동
- 교육구 구역 내에 위치한 주립 병원에 거주하는 학생
- 케어를 제공하는 성인과 살고 있는 학생, 단지 교육구가 해당 학생이 케어 제공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집 주소에 해당되는 학교를 찾기 원한다면, www.lausd.net에 로그인하여 Find a School을 검색하거나 학교 정보 부서(the School Information Branch)에 (213) 241-2450에 연락하도록 한다.

학교 일정 스케줄

교육법 제 48980 (c) 항에 의하면, 단축수업일과 교직원 전문성 개발 휴교일 통지서를 재학생 부모 및 보호자에게 보낸다. 만약 단축수업일과 교직원 개발 휴교일이 차후에 정해진 경우, 운영위는 가급적 신속히 해당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지만 정해진 단축수업일이나 학생 수업 없는 휴교일(pupil-free day)로부터 적어도 한달 전에 통지한다.

캘리포니아 종합 성 건강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에 준한 성교육 과정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51210(f) 항에 의거하여, 1-6 학년생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을 제공해야만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해당 학급에 자체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LAUSD 위원회 방침에 따라,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종합 보건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6학년은 의무적인 12-주 보건 교육 과정, 7학년은 한 학기 과정 그리고 9학년은 한 학기 과정을 이수하면 중학교 필수조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고교생들은 고교 졸업 조건으로 적용되는 한 학기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학교는 다음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1. 의도치 않은 임신 및 성병 예방하고 자, 신의 성 생식기관 건강 보호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 모든 학생이 사춘기의 발육과 성장, 신체 이미지, 남녀 역할, 성적 성향, 연애, 결혼 및 가족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통지서 및 부모의 면제 요청:

학교는 학생들이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함께 인간의 성 및 HIV/에이즈에 대해 대화하도록 독려하며, 이런 주제에 대한 자녀 교육을 감독할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학교는 부모 및 보호자가 종합 성 보건 교육과 HIV/에이즈-예방 교육 자료를 평가하고 관련 검사를 용이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서 부모가 자녀가 이런 교육이나 평가에 일부 또는 전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안에 대해, 학교는 인간의 성적 관심과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부모와 보호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자녀가 종합 보건 교육 또는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나 보호자는 반드시 학교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교육법 제 51938조에 의거하여,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종합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예방 교육과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1. 매 학년초 또는 그 이후에 등록된 학생에게, 교육구는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예방 교육 및 이런 교육에 사용될 학생 보건 행동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부모나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는 다음의 정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사용될 문서 및 시청각 교육자료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는 교육구 직원 또는 외부 자문인을 통해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 만약 외부 자문인이 이런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 학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교육이 초청 연설인을 통해 교실 수업 또는 조회 시간동안 실시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두 개의 경우 모두, 다음 정보도 추가하여 반드시 통지해야만 한다; (a) 수업 일자; (b) 각 초청 연설인, 강사의 소속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명칭; 그리고 (c)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법규 (교육법 제 51933항과 제 51934항)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부모나 보호자의 권리. 더불어, 외부 자문인 또는 초청 강사에 의한 교육이 해당 학년이 시작된 이후에 주선된 경우, 이런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이전에 우편 또는 일상적인 부모 통지 방법을 통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 부모나 보호자는 교육법 제 51930-51938 항에서 찾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 예방 교육법에 대한 사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 부모나 보호자는 종합 성 보건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
2.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지하고,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이 이런 활동에 참여해도 된다는 서면 허락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는 제 51513조에 필수 조건 즉, 성에 대한 학생의 사적 믿음 또는 행위, 가족 생활, 도덕성 또는 종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또는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의 성에 대한 믿음과 행위, 가족 생활, 도덕성, 종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어떠한 질문서, 설문서, 검사 도 K-12학년 학생들에게 실시할 수 없다. 학교는, 본 법규에 의거하여, K-12학년생 대상으로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익명으로, 자발적으로, 기밀 리서치 및 기밀 평가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성 관련 학생의 태도 또는 행위에 대한 연령에 적합한 질문을 포함한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가 포함되며, 이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이런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가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통지하고, 부모나 보호자에게 자료를 검토할 기회와 자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 속한다.

학교가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자녀의 불참여 요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학생은 종합 성 교육 및 HIV/에이즈-예방 교육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기밀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서에 답하지 않는다.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의 종합 성 보건 교육 또는 HIV/에이즈 예방 교육 참여 허락을 거절하거나,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기밀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서 참여 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학생에게 징계처분, 학업 처벌 또는 기타 처벌을 내려서는 절대로 안된다.

종합 성 보건 교육, HIV/에이즈-예방 교육 동안 또는 학생의 건강 행동 및 위험에 대한 익명의, 자발적, 기밀 테스트, 질문서 또는 설문서 실시 동안,

이런 수업 또는 테스트, 질문서, 설문서 불참여를 요청한 부모나 보호자의 자녀에게 대안 교육 활동이 제공되어야만 한다.

위임된 종합 성 건강 교육

1. 교육구는 종합적인 성 건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임신, 가족 계획, 및 성병을 포함한 인체 발육 및 성적 관심에 대한 교육을 의미한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2. 교육구는 인체 성적 관심, 임신 및 성병에 대해 가장 최근의 의료 리서치를 정확히 알고 있고, 연수교육을 받은 교육구 직원 또는 외부 자문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업은 다음 조건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
 - 수업 내용 및 자료는 이런 수업을 받는 연령 학생의 지성, 감성, 행동 능력에 적합해야 한다.
 - 가르치는 모든 정보는 의료적으로 정확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리서치에 의해 검증 또는 뒷받침되고, 과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검토되었으며, 연방 기관 및 의료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 단체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수업 내용은 영어 학습자(제 306조 부조항 (a)에 설명됨)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기존의 교과과정 및 영어 학습자를 위한 대안 학습과 일치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인종, 성별, 성적 성향, 민족, 문화 배경, 장애를 고려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장애학생에게 적합해야만 하며, 이는 교과과정 수정, 자료, 수업 방식, 부가 자료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학생이 부모나 보호자들과 함께 인간의 성적 관심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결혼 및 서약된 관계 존중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 7학년부서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성병 예방의 유일한 방법이고,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기타 사적 및 사회적 혜택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수업내용과 자료는 임신 및 성병 예방법에 대한 정확한 의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7학년부서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에는 성병이 어떻게 전염되며, 연방 식품약물국(FDA)이 승인한 성병 전염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효과 및 안전도, 성병 검진 및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자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 7학년부서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모든 임신 예방 관련 모든 FDA-승인 피임법의 효과 및 안전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에는 응급 피임법, 기타 승인된 방법이 포함된다.
 - 7학년부서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적 관심에 대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 7학년부서는, 수업 내용과 자료는 3세 이하의 아기를 합법적으로 식별된 병원 또는 “안전한-포기 장소”에 물리적으로 포기한 부모나 기타 사람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보건 및 안전법 제 1255.7조 및 형법 제 271.5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3. 7학년이 되기 전에 종합적인 성 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구는 바로 위의 패러그래프 8부터 12까지에 포함된 모든 일반 주제에 대한 정보를 연령에 적합하고 의료적으로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7학년 이전에 시작할 경우, 다음 패러그래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 수업 내용과 자료는 성, 인종 그룹 식별, 민족,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 장애(교육법 제 220조에 목록화됨), 또는 조상, 성별, 성적 성향(형법 제 422.6조에 추가 목록이 있음)에 근거하여 개인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한다.

필수 HIV/에이즈 예방 교육

1. 교육구는 7학년부서 12학년 학생들에게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가 HIV/에이즈 예방 교육을 중학교는 최소한 1회(8-10 시간 수업), 고등학교에서 1회(8-10 시간 수업) 제공해야만 한다.
2. HIV/에이즈-예방 교육은, 교육구 직원 또는 외부 자문관이 가르치는가에 상관없이, 위의 제 51933조의 패러그래프 1부터 6 그리고 위의 제 51933조의 마지막 부분의 패러그래프 1과 2에 명시된 필수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미 보건부 장관, 연방 질병통제국, 전국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의 정보와 추천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시켜야 한다:
 - HIV/에이즈의 특성 및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한 정보
 - 어떤 HIV가 전염되고 전염되지 않는지, HIV 감염의 가장 높은 위험을 내제한 행위에 대한 정보
 - HIV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토론, 성적 금욕, 일부일처제, 여러 명의 성 파트너를 회피하고, 정맥 약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HIV/에이즈 예방 방법이고, 성병 관련 HIV 감염 예방에 있어서 콘돔과 기타 피임제의 성공 및 실패, 정맥 주사 약물 사용으로 인한 HIV 전염 위험을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의료 정보에 대한 통계에 대해 교육.
 - HIV/에이즈 관련된 일반 대중의 보건 문제에 대한 토의
 - HIV 검사 및 의료 치료를 받기 위한 관할 자원에 대한 정보.
 - 또래 집단의 압력을 거부하는 기술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결정력 사용에 대한 교육.
 - HIV/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견해에 대한 토론, 고정 관념, HIV/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 HIV/에이즈 걸린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을 강조한 교육.

직원 연수 교육

1. 구역별 계획, 합동 계약, 교육구 커뮤니티 내의 구성원과의 계약 서비스를 통해, 교육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HIV/에이즈에 대한 연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만 한다.
2. 교육구는 주 교육부와 HIV/에이즈를 교육할 교육구 교사들과 합동하여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대한 연수 트레이닝을 개발하고 제공해야만 한다.
3. 교육구는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대한 연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이 HIV/에이즈에 대한 새로이 개발된 과학적인 지식을 배우도록 해야한다. 이런 연수 교육은 주 교육부 또는 연방 질병통제국으로부터 연수 교육을 받았거나 전문 지식을 보여준 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 교육구는 HIV/에이즈 연수 교육을 확장할 수 있고, 종합 성 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직원을 포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 건강에 대해 새로이 개발된 과학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교육구는 종합 성교육 또는 HIV/에이즈-예방 교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복수 언어 교과과정을 개발한 외부 자문관 또는 교육구 직원에게 교육 또는 트레이닝을 전달하기 위해 장애자들에게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한 외부 전문가를 계약 채용할 수 있다. 교육구 LAUSD HIV/AIDS 예방 부서로부터 반드시 심의받고 그리고 승인받아야만 한다.

성희롱 관련 정책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LAUSD) 성희롱이 없는 작업 및 학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교육구는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을 근거로 교육구의 고용인, 학생 또는 교육구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희롱을 금한다. 이런 방침을 불이행하는 것은 주법 및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기타 언어적, 시각적 성적 내용, 또는 성적 내용이 담긴 육체적인 행위가 직업 또는 교육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런 장소에서 다음의 조건에서 행해질 경우를 성희롱이라고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12.5항이 정의하고 있다:

- 해당 행위에 대한 복종은 개인의 취업, 학업 상황이나 진전도의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 행위에 대한 복종이나 거절,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취업 또는 학업 결정 근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용되었다.
- 해당 행위가 개인의 근무 내용, 또는 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을 지니고 있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 또는 공격적 작업 또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 해당 개인의 행위에 대한 복종이나 거절, 또는 한 개인의 행동이 해당 개인의 혜택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또는 교육 기관에서 또는 교육 기관을 통한 포상상,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보호된 영역(위에 언급된 상황들)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를 목격하는 즉시, 학교 직원은 중재가 안전할 경우 이를 즉시 조치해야만 한다. 이런 행위를 행정관 또는 타이틀IX/왕따 고소 매니저에게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중재가 될 수 있다. 학교 또는 해당 부서가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를 통지받는 즉시, 그리고 이런 행위가 교직원, 학생 또는 제 삼자에 의해 행해진 것에 상관없이, 즉각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조사하거나 발생한 상황을 결정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그 행위를 종료시키고 공격적인 환경을 제거하며,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한다. 이런 조치들은 불평 제기가 없다고 하여도 그리고 학교나 부서에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없어도 취해져야 한다. 본 방침은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감 관할권 소속의 모든 학교 또는 부서 내에서 행해지는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출석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성희롱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교육구 학생 또는 고용인은 학교-현장 행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타이틀IX/왕따 고소 매니저에게 문제건을 알려서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 본 교육구는 성희롱 고소장 접수를 한 사람 또는 고소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 행위를 금한다. 고소 내용은 즉각 조사되며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은 보호된다.

추가 정보나 학생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보호자의 염려 사항이 있다면, 학교 행정관, 학교 타이틀IX/왕따 고소 매니저, 또는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로 연락하십시오. 교육구 직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균등 기회 부서 (213) 241-7685로 연락하십시오.

특수 교육: 고소안 대응 부서(COMPLIANT RESPONSE UNIT-CRU)

장애 학생의 부모로 구성된 고소안 처리 부서(CRU)는 자녀의 특수 교육, 교육구 특수교육 방침 및 절차, 조정된 동의 법령 그리고 교육구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트레이닝을 장애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한다. CRU는 장애 학생의 부모가 특수교육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인지된 고소건 또는 교육구 특수교육 방침 및 절차 지침과 관련된 고소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이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이다. CRU는 학부모의 고소와 관련하여 부모가 외부 고소건 및 적법 절차 장치를 취할 필요 없이, 해당 고소건에 대해 교육구가 법적 응답을 취할 수 있도록 교육구에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고소건이란 다음의 조건을 시행을 위반했다고 인지하는 주장이다: (a) *미 장애인 법 (IDEA)*; (b) 캘리포니아 교육법; 또는 (c) 본 교육구의 *특수 교육 방침 및 절차 지침서*. 고소장이 접수된 후 그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CRU는 교육구의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서면 응답서인 법적 응답서를 제공하며, 다음 중 하나에 속할 수 있다: (1) 구제 조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구제 조치가 시행될 날짜; (2) 해당되는 의뢰건에 대한 정보; (3) 고소인이 원하는 내용에 대한 제안된 조치; 또는 (4) 고소건이 조사되었고 근거 없는 건이라는 결정.

정보 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소안 대응 부서 학부모에게 (800) 933-8133으로 연락하십시오.

학생 사고 보험

학교 대항 운동경기 참여 학생은 주 교육법 제32220-32224항에 의거하여 의료 또는 사고 의료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의료 및 건강 정보 하의 “학생 건강 보험”에 참고된 건강 보험 플랜은 부모들이 주법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운동, 사고 및 질병을 커버하는 공공 및 사설 보험 관련 정보를 원한다면, 위험 관리 부와 보험 서비스 부(Division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Service-위험 관리)에 (213) 241-2176으로 연락하십시오. 사설 보험 정보도 위험 관리 부서 웹사이트 <http://riskmanagement.lausd.net>에서 찾을 수 있다.

무료 및 저-비용 건강 보험 정보는 LAUSD 아동 헬스 액세스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Children’s Health Access and Medi-Cal Program-CHAMP)에 무료전화 HELPLINE에 (866) 742-2273로 전화하거나 그리고/또는 <http://achieve.lausd.net/CHAMP> 웹사이트를 검색하십시오. *메디-칼* 연장 및 구입 가능 의료법 (ACA 또는 오바마케어)로 더 일반적으로 알려진)의 CHAMP를 통해서도 부모, 성인 및 일반 주민의 건강 보험 등록을 도와준다.

학생 출석 옵션

캘리포니아 법 [교육법 48980 (i)]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교육구는 교육구가 배정한 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에서도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정보를 새학년초에 각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집 주소에 해당되는 학교를 알아보려면 achieve.lausd.net에 로그인해서 the Find a School로 가서 검색하거나 학교 정보 부서에 (213) 241-2450으로 연락하도록 한다.

학생 건강 보험

LAUSD's Children's Health Access, 메디칼 프로그램 (CHAMP)을 통해 부모들은 Medi-Cal, Healthy Kids, Kaiser Child Health Plan과 같은 무료 또는 저-비용 의료 보험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에 자녀를 등록시킬 수 있다. 이민 신분과 관계없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관련 정보나 등록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CHAMP 무료전화 HELPLINE에 1(866) 742-2273로 전화하거나, CHAMP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CHAMP>를 검색하도록 한다. 학교는 CHAMP 에 연락하면 교직원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일정을 잡을 수 있다.

학생/학교 품행 규정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의 제 300조에 의하면, 학생은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모든 지시를 복종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교사와 권위있는 타인에게 예의바르게 대하고, 음용하거나 상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프리스쿨부터 성인학생들까지 모든 학생들은 안전, 존중, 우호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교육자들은 교육에 방해와 장애가 없는 분위기에서 교육시킬 권리가 있다. 교육구 기초 방침: 학교-차원의 긍정적인 행동 지원서에는 행정적 리더쉽, 팀-중심 실행, 행동 기대치의 정의, 교육, 모니터, 강화, 정정 그리고 데이터 중심 결정권이 설정되어 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인 학교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품행 원칙

1. 존중
2. 책임감
3. 다양성 이해
4. 정직
5. 안전
6. 평생 학습자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기회를 학생에게 주어야 한다. 아래 항목 중 어떠한 행위를 저질는 것으로 판명된 학생은 정식 조사의 대상이 되며, 해당되는 경우 정학, 퇴학 그리고/또는 법 집행기관 의뢰를 포함할 수 있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1. 왕따/위협
2. 무기 소지
3. 싸움/협박/폭력
4. 약물 소지/매매
5. 낙서/건물 손괴
6. 갱 활동
7. 컨닝 및 표절
8. 도용 및 허위
9. 성희롱 및 성폭행
10. 공갈 및 착취 행위
11. 편견 및 혐오 범죄
12. 강도 및 절도
13. 불꽃놀이 및 폭죽

적절한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은 다음을 행해야 한다:

1. 학교 및 학급 규율을 배우고 준수한다.
2. 갈등을 신체적, 언어적 폭력 없이 성숙한 태도로 해결.
3. 낙서, 무기 및 약물이 없는 안전하고 정결한 교정을 유
4. 타인에게 모범이 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왕따, 괴롭힘, 혐오 사건을 신고한다.
6. 경기장이나 운동장에서는 양호한 스포츠맨십을 보인다
7. 교과서/학습자료를 가지고 배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정시에 학교에 출석한다.
8. 안전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학생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한다. 학생의 아이디어, 생각 및 의견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학교의 기상은 다음을 의미한다

- 타인 존중
- 평화적인 해결책
- 타인의 말 경청
- 약물 사용하지 않음
- 청결하고 아름다운 교정 유지
- 건전한 친구관계
- 자신 직접한 공부
- 정직함과 인격 수양터
- 공감과 배려심

- 타인의 권리 옹호
- 다양성 이해
- 타인의 재산을 존중
- 안전한 활동에 참여

학생 수색

미합중국 헌법 제 4 수정안은 불법 수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하지만, 법은 제한된 특정 상황 하에 학교 직원이 학생을 수색하는 것을 허용한다.

1.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
법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러려고 하거나, 제정법 또는 학교 규율을 위반했다는 **합당한 의심**을 행정관에게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학생이 개입한 경우, 해당 행정관은 학생을 수색할 수 있다. 해당 행정관은 다음을 해야 한다:
 - 의심의 이유 그리고 사실 그리고/또는 특정 사건의 간접 정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학생과 특정 사건, 범죄 또는 규율 또는 제정법 위반 행위를 합당하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사적인 지식 그리고/또는 기타 증인들로부터 최근의 신빙성있는 정보에 근거한다.
 -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이 학생의 연령, 성별, 범법 행위에 비추어볼 때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학생 수색을 집행할 때, 학교 직원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심 사유가 있고, 학생과 특정 비행 사건과 연결시키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수색을 행한다.
 - 자켓, 지갑, 주머니, 백팩, 가방, 학생 소지물이 있는 상자는 합당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색할 수 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신체, 나체 수색은 행해질 수 없다.
 - 동일한 성별의 학교 직원만이 수색을 행할 수 있다.
 - 합당한 의심에 근거한 수색은 기타 학생이나 교직원이 볼 수 없는 사적 공간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성별의 학교 행정관 또는 지정된 증인은 예외이다).
3.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
캘리포니아 법정 및 캘리포니아 검찰청은 무작위 무기 탐지기 사용을 승인했다. 금속 탐지기의 무작위 사용은 다음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 수색 대상의 학생 선정 방식이 진실로 무작위이다.
 -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에 선정된 학생은 인종, 성별, 성명, 그룹 결연관계, 또는 과거의 비행 행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식별될만한 특징을 고려치 않고 선정되었다(예: 수색 대상을 선정할 때 무작위로 한다)
 - 수색은 침범 범위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 학교 직원은 무작위 금속 탐지기 수색 절차에 대한 자세한 통지문을 사전에 학생과 부모에게 제공한다

금속 탐지기 수색의 결과, 만약 특정 학생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합당한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발생한다면 학교 직원은 사적 공간에서 학생을 수색할 수 있으며, 이를 합당한 의심 수색에 대한 위의 지침사항에 따라 집행한다.

학생 소지품

개인 소지품은(핸드폰, 아이패드, 카메라, 전자게임, 라디오, CD 플레이어, 컴퓨터 등) 손실, 절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더불어 이런 것들은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교직원이 이를 몰수할 수 있다. 교육구는 이런 물품의 손실이나 절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락커에 둔 경우도 포함).

장애 학생 및 특수 교육

아동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공부한다. 장애 학생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장애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에 의해 결정된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팀은 학생의 부모(들)도 동등한 파트너로 포함된다. 특수 교육 서비스는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고안되었고 부모의 재정적 부담은 없다. 일반 교육, 지원, 편의조치를 받으면서 정규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최대 적절한 범위에서, 장애 학생은 반드시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자신이 장애인인 것이 아니었으면 다녔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IEP 팀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교육 환경은 비장애 학생들과 최대한의 통합 기회가 주어지도록 모든 해당되는 보충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시하는 일반 교육 학급이다. 학생의 장애의 성격 또는 심각성으로 인해 보충 지원과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일반 학급에서 만족할 정도의 학습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그 학생을 일반 교육 학급으로부터 탈퇴시킬 수 있다.

취학-연령의 자녀가 장애 가능성의 의심이 있고 그리고 특수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부모는 인근 공립학교 행정관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비-등록 프리스쿨-연령 자녀의 부모가 자녀의 장애 가능성이 의심되고 그리고 특수 교육 서비스 자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조기 유아 특수 교육부서에 (213) 241-4713으로 연락한다.

특수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교육구 발행물 즉,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절차상의 권리 및 안전 조치 포함)**에 제공되어 있고, 교육구 학교 및 특수 교육 부서 웹사이트에서도 제공된다: <http://sped.lausd.net/>. 특수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학교 행정관이나 특수 교육 부서에 (213) 241-6701로 연락하도록 한다.

1973년 재활법 제 504조 하의 장애 학생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제 504조) 제 504조는 연방 민권법이며, 미 문교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 및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실제의 또는 인지된 장애를 근거로 저질러지는 모든 유형의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는 허용될 수 없으며,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구는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괴롭힘 관련 고소건을 즉시 조사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차별/괴롭힘 사건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본 교육구는 제 504조는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FAFE)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규에 대한 특정 책임이 있다. 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비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만큼 충족시키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격은 없지만, 제 504조 하의 연방정부의

장애인 정의를 충족시키는 학생들을 위해, 제 504조 계획안(Section 504 Plan)은 편의조치, 보충 지원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되며, 이는 해당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 판별, 심의, 그리고/또는 학교 및 학급 배정 및 제 504조에 명시된 항소권에 관하여 교육구가 내린 결정 사항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들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504조에 대한 정보 그리고/또는 제 504조 관련 항소서나 고소장(균일 고소 절차를 참고하십시오)을 접수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비공식 중재나 공정한 청문회를 원한다면,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 (213) 241-7682로 연락하십시오.

임시 장애 학생

주변에 의거하여, 비전염성 의료 상태로 인하여 일반교육 또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잠정 기간동안 출석할 수 없는 유자격 K-12학년생은 학생의 집 또는 병원(Home/Hospital instruction)에서 학습 지도를 제공받는다. 잠정적인 장애 기간동안에도 학생의 학습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의도이다. 집/병원 교사는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과 최대한 비슷한 학과목 수업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홈/호스피탈 수업은 임시 서비스로 고안되었으며, 장기간의 정규 필수 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는다. 홈/호스피탈 수업은(1) 학생의 참여 능력에 근거하여 시작해도 좋다는 주치의 허락이 있을 때 시작되며 그리고 (2) 교육 의무를 잠정적으로 이전한다는 부모의 허락을 받는 즉시 시작될 것이다. 잠정 기간동안의 홈/호스피탈 학습지도는 현재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학생 또는 섹션 504 학생들에게도 제공된다-특정 상황에서만 해당됨.

보충 교육 서비스

2014년 9월 12일, 미 문교부는 LAUSD와 여러 CORE교육구를 대상으로 나오자 없는 교육법으로부터 1년 동안의 면제권을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LAUSD는 2013-14 그리고 2014-15 학년도에는 보충 교육 서비스(SES)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선순위, 포커스 또는 서포트로 지정된 CORE 면제권에 의해 지정된 학교들에게는 학교-주도 보충수업이 제공된다. 이런 면제권이 2014-15 학년도 이후에도 연장 적용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이런 면제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총교육감 웹사이트의 CORE 코너 웹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정학 및 퇴학

교육법 제 48925 (d)조가 정의하는 바에 의하면, 정학은 “조정할 목적으로 학생을 진행중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다. 학생은 연속적으로 5일을 초과한 정학처분을 받을 수 없다. 교육법 제 48925 (b)조에 정의에 의하면, 퇴학은 (1) 즉각적인 감독 및 규제로부터 또는 (2) 학교 직원의 일반 감독으로부터 학생을 제거....“하는 것이다. LAUSD 소속, 학생 징계 및 퇴학 절차부는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청문회와 모든 적법 절차 권리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집행 유예없는 퇴학처분(“즉각 퇴학”)을 받은 경우, 퇴학 기간동안 LAUSD 학교나 프로그램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퇴학 집행 유예를 받은 학생은, 교육법 제 48917조에 의거하여, 퇴학 기간 동안 LAUSD의 교육적 대안 프로그램에 배정될 수 있다. 퇴학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학기의 잔여 기간; 해당 잔여 학기와 그 다음 학기; 또는 일 년 학년도 기간, 위반 내용 그리고/또는 해당 학생의 사회 적응 배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 A. 정학 또는 퇴학 조치 관할범위는 학교 행사나 이런 활동에 출석하여 그 시간동안 언제라도 발생한 비행 문제까지 연장된다.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학교 부지에 있는 동안.
 - 등하교 시.
 - 교정 안팎에 관계없이, 점심 시간.
 -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동안, 또는 행사에 가는 동안, 행사로부터 돌아오는 동안.

캘리포니아 법규에 의거하여, 학급 교사는 교육법 제 48900에 명시된 문제 행동을 취한 학생에게 그 학급으로부터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단지 교육법 제 48900 (k)항에 명시된 의도적 반항 비행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런 내용은 교육위 결의안: 학교 훈육 방침 및 학교 문화 권리장전에 설명되어 있다. 학생에게 수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경우, 해당 교사는 이를 즉시 교장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그런 다음, 교장은 학생을 학교 정학처분을 내릴 것인지 또는 학생을 해당 수업 정지 처분 시간동안 교정에 남아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교장 또는 교장 대리인만이 학교 정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업 정지처분 기간은 학생이 처음 수업 정지를 받은 당일 수업 나머지 시간(또는 해당 수업 시간) 그리고 다음 날(또는 다음 날 해당 수업시간)보다 더 길 수 없다. 수업 정지처분을 받은 학생은 적절한 감독 하에 교정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런 수업 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교사는 되도록 신속히, 학교 행정관, 학교 카운슬러 또는 학교 심리학자와 부모가 동석한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학생이 상스런 행위를 저질렀거나, 상습적인 욕, 험한 언어 사용을 한 경우, 또는 교사나 행정관의 타당한 권위로 명시 명시된 학교 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교사는 부모/보호자에게 자녀의 수업 시간의 일부를 참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B. 품행 교정의 여러 수단 (교육법 제 48900.5 항)

학교에 와서 받는 정학처분과 수업 정학처분과 같은 감독하의 정학처분은 올바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기타 교정 방법이 실패한 경우 그리고/또는 안전이 위협한 경우에만 정학처분이 취해진다. 교육법 제 49069항에 의거하여, 취해진 품행 교정의 여러 수단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학생 훈육 서류로 보관하여 필요할 경우 볼 수 있도록 한다.

- C. 정학/퇴학 근거 (교육법 제 48900 및 부조항)

- (a)(1) 타인에게 상해를 초래했거나, 시도하였거나, 상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였다
- (a)(2) 타인의 신체에 원력 또는 폭력을 의도적으로 가했거나, 정당 방어를 예외이다.
 - (b) 화기, 칼,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다만 자격증 소지 직원이 해당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장 또는 담당인이 이를 동의한다는 허가서를 취득하여, 이런 물건을 소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 (c) 보건 및 안전법 제 10장 2항(제 11053조부터 시작)에 열거된 규제 약물,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을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 제공하거나 영향하에 있는 경우.
- (d) 보건 및 안전법 제 10장 2항(제 11053조부터 시작하여)에 열거된 규제 물질,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의, 주선, 또는 협상하는 경우 그리고, 리커, 물질 또는 재료를 타인에게 판매, 보급, 또는 제공한 경우 그리고, 리커, 물질 또는 재료를 규제 물질, 알콜성 음료, 또는 유독성 물질로 제시한 경우.
- (e) 강도죄, 공갈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 (f) 학교 재산 또는 개인 재산에 피해를 초래했거나 시도한 경우.
- (g) 학교재산이나 개인재산을 훔쳤거나 시도한 경우.
- (h) 담배, 또는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물품을 소지하였거나 판매한 경우이며 다음의 물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담배, 시가, 축소형 시가, 클로브 담배, 무연 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베텔 담배가 해당된다. 그러나 학생 본인에게 처방된 물품을 학생이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본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 (i) 음흉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상스러운 언동이나 욕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j) 보건 및 안전법 제 11014.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약물 장치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제의, 주선 또는 협상하는 경우.
- (k) 학교(-학교 전체) 활동을 방해한 경우 (행정관에 의한 정학 처분만 해당: 퇴학 적용 안됨) (4-12학년).
- (l) 학교 재산이나 개인 재산이 장물인줄 알면서 이를 수취한 경우.
- (m) 모조 총기를 소지한 경우
- (n) 성폭행 또는 성 구타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한 경우.
- (o) 고소 당사자로서 증인, 증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이 증언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나 증언하는 학생에게 보복 행위를 할 목적이거나, 두 개 목적을 위해서 해당 학생을 괴롭히거나, 협박이나 위협하는 경우.
- (p) 처방약 소마(Soma)를 불법적으로 제의, 판매 주선, 판매 협상 또는 판매한 경우.
- (q) 제 32050항에 명시된 신고식 유형의 괴롭히는 행위에 개입했거나 개입을 시도한 경우.
- (r) 왕따 행위에 개입된 경우로서,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학생이나 교직원을 특정 대상으로 삼아, 전자상행위의 방법으로 저질러진 왕따 행위.
- (t) 타인에게 신체적인 부상을 입히거나 시도하는 것을 방조한 경우(정학에만 해당됨)

48900.2 성희롱죄를 저질른 경우 (4-12학년생)

48900.3 증오성 폭력죄를 저질렀거나, 시도했거나,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이런 행위에 참여한 경우 (4-12학년생)

48900.4 교육구 직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 협박 또는 위협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경우 (4-12학년생)

48900.7 교직원이나 학교재산 또는 교직원과 학교 재산을 함께 목표물로 정한 테러 협박하는 행위

D. 퇴학 권고 상황들 (교육법 제 48915 항)

교장 또는 교육구 교육감은 학교 활동 또는 학교 교정이 아닌 장소에서의 학교 활동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퇴학을 권고하며, 단지 교장이나 교육감이 특정 상황 하에 또는 품행 교정에 대한 대안 방책이 있어서 퇴학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a) 정당방위를 제외한, 타인에게 신체적 부상을 입혔다.
- (b) 모든 종류의 칼 또는 합리적으로 학생이 소지할 이유가 없는 위험 물건을 소지한 경우.
- (c) 다음의 제외한, 규제 약물을 불법 소지한 경우:
 - i. 농축 대마초를 아닌 마리화나 1 상형 온스를 소지한 첫 위반 행위
 - ii. 학생의 의료 목적으로 이용한 일반 약 또는 의사가 학생에게 처방해 준 약을 소지한 경우
- (d) 강도 또는 공갈 행위
- (e)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격 또는 구타 행위

교장 또는 교육구 교육감은 학교 활동 또는 학교 교정이 아닌 장소에서의 학교 활동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즉각적인 정학 및 퇴학 권고를 취한다:

- (a) 총기 소지, 매매, 또는 공급.
- (b) 타인에게 칼을 휘둘린 경우.
- (c) 규제 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 (d)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미수 또는 성구타를 저지른 경우
- (e) 폭발물 소지

E. 장애 학생의 행동 중재

학습에 방해가 되는 문제 행동 장애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절차를 통해 행동 지원 플랜을(BSP) 받아야 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은 긍정적인 행동 중재 및 지원을 통해 이런 학생의 학업 및 행동 필요를 접근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장애 학생은 적정시에 긍정적인 지원과 중재 그리고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연방 장애인법(IDEA) (20 U.S.C. 조 1400 부조항)에 의거한다. 행동 중재, 지원 및 기타 전략이 적용될 때, 학생의 신체적 자유 및 대인 관계를 반드시 고려하면서 적용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 사생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학생의 최저 제한적 교육 환경에 배정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평가를 토대로 학생의 필요를 결정하고, 의미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그리고 적절한 학습지도 및 행동 지원 및 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의 책임이다.

F. 장애 학생의 정학, 기회 전학 및 퇴학

법에 의거하여, 장애 학생들에게는 추가 절차와 심사숙고가 필수적으로 주어진다:

- 정학:
 - 특수교육: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을 경우, 교직원은 행동 지원 플랜(BSP)을 작성하기 위해 IEP 회의가 필요하지, 또는 문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행동 지원 플랜(BSP) 및 중재를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정학 처분의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 행동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 행동 지원의 필요 여부 그리고 현재 배정 및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IEP 팀 회의가 요구될 수 있다. 한 학년도 동안 10일 이상의 정학은 내려질 수 없다. 정학 일수가 10일째가 될 때, IEP 팀이 확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섹션 504조: 섹션 504조 플랜이 있는 학생은 일반 교육 학생으로 간주되며, 일반 교육 학생들과 동일한 정학 일수가 적용될 수 있지만, 추가 정식 징계처분이 있기 전 그리고 이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정학 10일째 되는 날에는 섹션 504 확정성 결정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분석해야만 한다.

- 퇴학:

특수교육: 특수 교육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고려하는 경우, 퇴학 권고 및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결정 사유를 심의하기 위한 예비-퇴학(pre-expulsion) IEP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장애 학생이 퇴학 당한 경우, 퇴학 기간동안 IEP에 명시된 특수 서비스를 계속받을 권리가 있다. 퇴학 처분받은 학생은 퇴학 기간동안 퇴학 후 서비스(post-expulsion service)를 받을 권리가 있다(퇴학으로부터의 재할 및 복원을 참고하십시오). 해당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학생의 IEP에서 정한바와 같이 가장 적절한 교육 장소에 배정된다.

섹션 504조: 섹션 504조 하에 해당되는 학생의 퇴학은 징계성 배정 변경으로 간주되며 그리고 그 학교의 섹션 504 팀이 확정적인 결정 회의를 실시하여 징계 대상이 된 행위가 원천적으로 학생의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또는 교육구가 섹션 504 플랜 실행을 불이행한 결과로 이런 행위가 나타난 것이 아닐 경우에만 퇴학권이 발부될 수 있다.

추가 정보는 **특수 교육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 안내서(절차상 권리 및 안전조치 포함)**를 참고하십시오.

징계처분에 대한 항소

정학처분과 기회 전학에 대한 반대 또는 이의제기는 해당 교육 서비스 센터(ESC)에 직접할 수 있다. 퇴학 권고를 받은 학생은 퇴학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 청문회 후, 퇴학 권고는 교육위원회에 상정되고,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의 부모/보호자, 변호사는 교육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언할 수 있다. 퇴학 항소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에 접수시킬 수 있다.

퇴학 후 재할 및 복원

캘리포니아 법규에 의거하여, 교육구는 퇴학 학생에게 학교를 배정하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구는 퇴학 학생들을 위해 재할 플랜과 전략서를 작성하여 교육구 커뮤니티 데이 학교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위임해야만 한다. 교육구의 학생 훈육 및 퇴학 지원 서비스 부서(Student Discipline and Expulsion Support Services Unit-SDES)는 학생/부모 입점 평가를 실시하고, 표적 케이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리고 학생의 사회, 행동 및 학업 진도를 모니터 한다.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SDES는 교육위를 대신하여 퇴학 학생의 복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복원 후 학생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해야 한다. 교육법 제 48916조에 의거하여, 재입학 절차를 잘 완수했을 때 교육위는 해당 학생을 재입학시킨다. 하지만 학생이 재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거나 학교 안전이나 기타 학생 또는 교육구 직원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된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재입학되지 않는다.



타이틀 IX 및 학생

연방법, 타이틀 IX, 주법 및 교육구 방침은 실질적 또는 인지된 성, 성적 기호, 남녀 성별(성 정체성, 성별 표현, 결혼 여부, 임신, 자녀 분만, 허위 임신, 임신 중단 또는 관련 의료 상태가 포함됨)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학생에게 참여에서 제외시키거나, 혜택을 부인할 수 없으며,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해당 학교에서 동등한 교육 기회에 대한 권리를 지니며, 다음을 포함한 모든 활동과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운동
- 체육 교육
- 수강하는 클래스
-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대우받는 방법
- 상담의 종류
- 참여할 수 있는 과외활동, 프로그램 및 클럽
- 참여할 수 있는 영예상, 특별상, 장학금 및 졸업 행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학교 행정관, 타이틀 IX/왕따 고소 매니저, 심리학자, 카운슬러나 학교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상황을 정정하려고 시도하거나 고소장(균일 고소 절차를 참고하십시오)을 접수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가급적, 해당 학생에게 학교 자체에서 고소건을 해결해 볼 것을 권한다. 타이틀조항에 저촉되는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고소장을 접수시킬 권리가 있다.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 행정관, 학교 타이틀IX왕따 고소 매니저 또는 교육적 평등성 준수부서(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에 (213) 241-7682로 연락하거나 333 S. Beaudry Avenue, 20th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17로 서신으로 연락한다.

교통편-통학 버스

통학버스는 공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자격 학생에게만 제공된다. "귀하의 자녀 통학버스 스케줄 공식 통지서(Official Notification of your Child's Transportation Schedule-"mailer")"는 개학하기 전에 우송되고, 버스 노선, 통학버스 규율, 연락처, 기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을 유념하십시오.

- 부모는 자녀와 함께 통학버스 규율을 잘 살펴본다.
- 부모와 자녀는 개학일 전 버스 승차지를 직접 가보고, 자녀가 이곳을 가장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알아보아야 한다.
- 학생은 통학버스 승차 시간 보다 5전까지 도착하여 바로 승차할 준비를 해야 한다.
- 자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데려다 주고 픽업할 때 부모나 지정된 성인은 매일 버스 정차 장소에 있도록 한다.
- 부모와 학생은 통학버스 노선 번호와 학교명을 알고 있어야 하고, 버스가 15분 이상 늦는 경우 버스 디스패치에게 (800) LA-BUSES로 전화한다.
- 통학버스 승하차 시간은 노선 조정, 등하교 시간 변경, 교통 사정이나 날씨 상태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
- 부모는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그리고 학생을 데리고 가도록 위임된 성인의 이름(들)을 학교에 즉시 알린다(그리고 장애학생의 경우, 특수 교육 서비스 센터-운영부에 (213) 241-6701로 연락함).
- 교통편 관련 질문이나 열려 사항이 있다면 (800) 522-8737로 연락하거나 <http://transportation.lausd.net> 검색한다.
-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집에서 픽업하고 데려다 주는 서비스르 받은 학생은 버스 승하차 시 학생을 데리고 갈 지정된 책임있는 성인이 있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행동규범

타이틀 V 항, 캘리포니아 법규 제 14103조에 의하면, 통학버스 또는 학생 활동 버스로 이동하는 학생은 그 버스의 운전수의 권한 하에 그리고

그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된다. 더불어 해당 운전수는 버스 내 그리고 도로, 하이웨이에서 학생을 이동시키는 동안 학생들의 질서있는 품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학교버스를 타는 학생들은 학교에서와 동일한 규율과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비행, 학교버스 운행 방해, 학교버스 운전수에게 무례한 행동, 학교버스 안전 운행을 위협하게 하는 경우, 학교버스를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탈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여러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통학버스 내에서의 학생의 품행과 관련된 질문이 있다면, (800) 522-8737로 연락하거나 <http://transportation.lausd.net> 검색한다.

균일 고소 절차 (UNIFORM COMPLAINT PROCEDURES -UCP)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법, 연방법 및 규제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육구는 이런 법규와 법 조항 준수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는 고소건,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 주장 고소건, 교육적 활동에 대한 비용을 학생에게 부가했다고 주장하는 고소건, 그리고 로컬 콘트롤 및 책무 플랜 (LCAP) 법적 조건 불이행 고소건을 조사한다. 본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 제4600-4687 항 그리고 교육구 방침 및 절차에 명시된 균일 고소 절차(UCP)에 의거하여 이런 고소건을 관할 구역 차원의 해결을 추구할 것이다. UCP 고소건은 반드시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 제4600-4687 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접수되어야 한다.

UCP 고소건이 적용되는 혐의주장:

(1) 형법 제 422.5항, 교육법 제 220항에 명시된 실질적 또는 인진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행위; 상당한 지원을 받아 실시되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실질적 또는 인진된 성,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인종 또는 민족, 민족 집단 식별, 조상, 국적, 태어난 국적, 종교, 피부색, 정신 또는 신체 장애, 연령 을 근거로 또는 이런 실질적 또는 인진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그리고 또는 연방법과 주법 위반 행위.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262.3항에 의거하여, 고소건을 제기한 사람은, UCP 하에, 민법 구제책을 고지받으며, 이에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국한되지 않으며, 위반사항, 접근 금지령 또는 기타 구제책들이 주법 또는 연방법 차별, 괴롭힘, 위협 그리고/또는 왕따 법규 하에 제공될 수 있다.

(2) 유형별 자금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관련 법규 불이행의 경우:

- a. 성인 교육
- b. 통합 유형별 지원
- c. 이주자 교육
- d. 커리어 기술/기술 교육/기술 트레이닝
- e. 탁아 및 발육
- f. 아동 영양
- g. 특수 교육

(3) 비승인 학생 비용 부가: 학생은 교육 활동에 참여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단지 그런 비용의 부가가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허락된 경우 그리고 교육법 제 49011를 저촉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만약 해당 고소건이 학생 비용 관련 법규를 비준수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학생 비용 고소건은 의명으로 접수시킬 수 있다. 고소건은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로부터 일 년 이내 접수되어야 한다. 학생 비용 고소건이 타당성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공립학교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 부모 및 보호자에게 해당될 경우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에게 비용을 전체 상환하며, 이는 주 교육위원회가 채택한 법규를 통해 절차가 진행된다. 교육구는 고소건 접수일로부터 일 년전까지 학생 비용을 지불한 모든 학생, 부모 및 보호자를 식별하고 전체 비용을 상환하는데 합리적인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4) LCAP 관련 법적 조건 준수 불이행: 교육구가 LCAP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소건은 UCP 고소 절차를 통해 접수시킬 수 있다. (교육법 제 52075 항)

LCAP 필수조건은 교육법 제52060-52076항에 명시되어 있다. 2013년 7월 1일, 브라운 주지사는 하원의원 법안 97 즉, 로컬 콘트롤 펀딩 공식 (LCFF) 법안에 서명했다. LCFF의 일부로서, 교육구, 교육 카운티 부서와 차터 학교는 주 교육위 템플릿을 이용하여 삼년차LCAP를 개발, 채택하여 매년 업데이트시켜야 한다. LCAP은 연례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목표 실행을 위한 행동안을 작성해야만 하며 그리고 소영역 학생 집단의 진전도를 주정부에서 설정한 여덟 개의 우선순위들을 토대로 측정해야만 한다. 이런 우선순위들은 반드시 교육구의 지출 계획안과 일치되어야만 한다. LCAP은 반드시 연례 교육구 예산이 채택되기 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예산과 LCAP이 해당 교육구 차원에서 채택되면, 그 계획안은 카운티 총교육감에 의해 심의될 것이며 그리고 예상 지출을 목표 및 서비스와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은 여덟 개의 주 우선순위들이다:

- 1. 학생들에게 정식 유자격 교사, 주 학습기준과 일치하는 학습자료 그리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한다.
- 2. 캘리포니아 학업 학습기준 실행, 이에에는 주 학습기준 영어 언어 과목과 수학, 차세대 과학 학습기준, 영어 언어 개발, 역 사회 과목, 시각 및 공연 예술, 보건 교육 및 체육 학습기준.
- 3. 학부모 개입 및 참여, 이를 통해 인근 커뮤니티가 결정 과정과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개입하도록 한다.
- 4. 학생 성취도 증진과 여러 측정법을 통한 성과, 이에에는 테스트 점수, 영어 능숙도 및 대학과 커리어 준비가 포함된다.
- 5. 학생 참여 지원, 이에에는 학생의 출결석 또는 만성적 결석도 포함된다.
- 6. 학교 문화 및 유대감 증진은 정착 및 퇴학률과 기타 학교별로 식별한 다양한 요소로 적용한다.
- 7. 학생이 다니는 학교 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학 진학과 커리어를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클래스 기회를 제공한다.
- 8. 필수 학과목에 대한 중요한 학생 성과를 측정하며 이에에는 체육 및 예술 과목도 포함된다.

이런 여덟 개의 영역에 추가하여, 교육구는 자체적 우선순위와 관련된 플랜 목표를 식별하고 접목시킬 수 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총교육감에게LCAP관련하여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자문 위원회(PAC)와 영어 학습생 학부모 자문 위원회(ELPAC)를 반드시 형성한다. 어떤 교육구 등록 학생수가 최소 15%의 영어 학습생을 그리고 그 교육구에 최소 50명의 영어 학습생이 등록되어 있다면, ELPAC은 있어야 한다. 해당 교육구가 이미EL학부모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교육구는 새로운ELPAC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PAC은 저소득층 학생, 영어 학습생과 포스터 청소년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포함한다.

LCAP를 개발할 때, 교육구는 교사, 교장, 행정관, 기타 학교 직원, 관할 노조 협상위, 학부모 및 학생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런 자문 과정의 일부로서, 교육구는 반드시 그들의 제안 플랜을 PAC과 ELPAC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이런 자문 위원회는 제의된 플랜을 심의하고 이에 대해 소견을 피력할 수 있다. 교육구는 반드시 PAC과 ELPAC의 의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만 한다. 더불어 교육구는 일반 대중에게 LCAP에 제시된 특정

실행안과 지출안에 대해 서면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만 한다.

교육구는 LCAP를 토론하고 채택(또는 업데이트)하기 위해 최소 두 번의 공공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해당 교육구는 이런 플랜에 제시된 지출안에 대해 일반 대중의 추천과 소견을 듣기 위해 최소 일 회의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그런 다음 차후 청문회에서 LCAP을 채택 (또는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함) 해야만 한다. 본 교육구는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LCAP 그리고 LCAP의 업데이트 또는 수정 내용을 교육구 웹사이트에 반드시 게시해야만 한다.

준수 국장

교육구는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 디렉터는 교육구 준수 부서 책임자로 지정되었으며, 고소 사항을 접수, 조사를 지시하며 고소 및 차후 관련 소송과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여, 교육구가 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교육구 UCP 절차 또는 고소건 접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로 연락하십시오.

통지

교육구는 학생, 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학교 자문 위원회, 해당 사립 학교 임원이나 담당인, 그리고 기타 본 절차에 이익 당사자와 고소 처리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매년 서면으로 UCP 절차와 고소건 처리 책임자를 통지할 것이다.

UCP 고소장 접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방법 또는 주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은 반드시 교육구 교육 형평성 준수국으로 접수시켜야 한다. 고소인이 비준수 혐의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관련된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소장은 익명으로도 접수될 수 있다. 고소장 내용이 본 방침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인 경우, 고소인은 서면으로 조언을 받을 것이다.

UCP 균일 고소 절차 서식서는 요청시 학교나 교육구 사무실로부터 받거나 교육 형평성 준수 부서로 (213) 241-7682로 전화하여 받을 수 있다. UCP 방침 및 고소 절차서 사본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포함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으며, 고소장 접수를 원하고 서면 고소장을 작성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교육구 직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문 사본은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 교육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은 교육구로부터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십오일(15)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교육구로부터 받은 결정서 사본 그리고 해당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해당 법규가 잘못 적용된 내용을 진술한 내용뿐 아니라 고소장 원본의 사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그리고/또는 왕따 혐의주장에 대한 교육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서는 다음으로 보내야 한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the Assistant Chief Deputy Superintendent
1430 N Street, Suite 5405
Sacramento, CA 95814

학생 비용 및 LCAP 준수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는 다음으로 보내야 한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Categorical Programs Complaints Management Office
1430 N Street, Suite 6408
Sacramento, CA 95814

특수 교육 법 준수에 대한 교육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는 다음으로 보내야 한다: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Procedural Safeguards Referral Service
1430 N Street, Suite 2401
Sacramento, CA 95814

학교 캠퍼스 방문인

캠퍼스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교장/담당인으로부터 방문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은 가급적 요청과 동시에 또는 요청 후 적절한 시간내에 주어야 한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이 아닌 아동은 교장의 사전 허락을 받기 전에는 캠퍼스에 들어올 수 없다. 방문인은 수업이나 학교활동을 방해나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질서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구 방침 즉 공문 번호 3630호에 의거하여, 교육구-소유 또는 임대 부지 그리고 교육구 차량은 금연 장소이며 모든 담배 관련 제품, 전자-담배 및 기타 부속 기구들이 항상 금지된다. 이에는 직원, 학생 그리고 학교나 교육구, 학교-후원 행사에 참여는 모든 사람이 항상 이를 지켜야 한다. 다음은 방문인에게 기대되는 내용이다

- 교실 방문 요청시 이미 규정된 학교방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
- 학교 도착하는 동시에 방문인 허가증을 작성한다.
- 교실을 가급적 조용히 출입한다.
- 방문시 학생, 교사 그리고/또는 보조교사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 학교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교실 방문 시간과 빈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 방문 후, 교사 그리고/또는 교장을 만나야 하는 경우 학교 규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한다.
- 학교 차원에서 적용하는 행동 기대치를 숙지하고 준수한다.
- 캠퍼스를 떠날 때 방문인 허가증을 반납하도록 한다

학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학교 규칙 그리고/또는 절차 준수를 불이행하는 사람은 학교로부터 나가게 할 것이며 추가 방문이 제약받을 수 있다

윌리엄스/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윌리엄스/벨렌주엘라 균일 고소 절차, 교육법 제 35186항은 다음과 관련된 부모 및 보호자의 소송 권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모든 학교는 영어 학습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그리고/또는 방과후에 사용할 수



- 있도록 충분한 교과서 그리고/또는 학습자료를 제공해야만 한다.
- 2. 학교 시설물은 청결, 안전하고 양호한 수리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 3. 학교 시간 동안 충분한 수의 화장실이 청결하고, 비품을 잘 갖춘 상태로 오픈되어 있어야만 한다.
- 4. 각 클래스에 일련의 대리교사나 임시교사가 아니라 한명의 정식 교사를 배정하도록 한다. 해당 교사는 적절한 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해당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며, 영어 학습생이 해당 클래스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이어야 한다.
- 5. 12학년말까지 고교 졸업시험(CAHSEE)을 통과치 못한 학생에게 교육법 제 37254 (d)(4)에 의거하여 그리고 12학년을 이수한 후 (5)에 의거하여 집중적인 학습지도와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고소건은 윌리엄스/벨네줄엘라 균일 고소장을 사용하여 접수할 수 있고 또한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위의 문제에 대한 고소장 접수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학교 메인 오피스
- 또는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로 전화한다

문제 해결 및 응답 해당 기간을 맞추기 위해, 모든 고소장은 다음 중 한 곳에 접수시켜야 한다:

- 학교 현장(메인 오피스, 교장 등)
-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3312로 팩스 보내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한다:

LAUSD -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
 Williams/Valenzuela Complaints
 333 South Beaudry Ave., 20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윌리엄스/벨렌주엘라 UCP 관련 질문이 있다면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에 (213) 241-7682로 연락하도록 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부모/학생 인정서 2015-2016 학부모/학생 안내서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께:

교육법 48980 (a) 항에 의하면, 교육 위원회는 해당 교육구/학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권리를 통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학부모 권리에 대한 정보를 고지 받았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통지서에 반드시 서명하여 자녀의 학교로 보내야만 합니다.

새로이 작성된 학부모-학생 안내서를 읽으시고 서명한 아래 부분을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귀하의 서명은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취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연례 학부모/학생 안내서 통지서 수령증 2015-2016 학부모/학생 안내서

본인은 아래 본인의 서명에 의해, 본인의 아들/딸을 대신하여 학부모/학생 권리에 대한 연례 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합니다.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과 학년을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학생 성명:

성 이름 중간이름 이니셜

생년월일

학년

학부모/보호자 서명

학생 서명(6-12 학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부모/학생 안내서- 2015-2016

정보 공개 서식서

연방법 및 주법에 하에, 교육구는 허락된 특정 개인, 기관 그리고/또는 직원에게 학생 안내용 정보를 식별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9073에 의거하여, LAUSD는 위에 명시된 직원 및 기관에 공개될 수 있는 안내용 정보로서 다음의 유형의 정보를 식별했습니다. 17세 이하 자녀의 부모 및 18세 이상의 성인 학생은 안내용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하지 말라고 학교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학생 안내용 정보 비공개 요청은 이번 학년도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에 제시된 안내용 정보 공개 서식서를 읽고 작성한 다음, 학교 교장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본 서식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이 자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자녀의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 2015-2016학부모/학생 안내서

정보 공개 서식서

학교 명: _____

날짜: _____

학생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생년월일:	학년:
주소:	시:	
우편번호:	전화번호:	

학생 안내용 정보

1. 본인은 어떠한 안내용 정보도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또는
2. 본인은 아래 글상자 (들)에 표시한 내용에 따라 안내용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하지 않음
선출된 공무원	
L.A. 카운티 아동 및 폐밀리 서비스 국	
L.A. 카운티 건강 관련 서비스 국	
L.A. 카운티 정신 건강 국	
L.A. 카운티 보호 감찰 국	
LAUSD 학교-중심 건강 케어 제공자	
LA 트러스트 아동 건강 국	
학부모 교사 학생 협회	

	공개하지 않음
1. 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	
4. 출석 기간(예: 학년도, 학기)	
5. 현재 학교 및 최근 제학 학교(들)	
6. 학위, 아너스 및 수상 경력	

3. 11 학년과 12 학년생에게만 해당됨: 본인은 아래 글상자 I에 표시한 기관에 위에 명시된 학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_____ 미 합중국 국군력(군대) 모병 기관
- _____ 칼리지, 대학 또는 기타 고등교육 기관
- _____ 내셔널 학생 클리어링하우스 (대학 입학 진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2015-2016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

본 교육구는 통합 해충 관리 방침(IPM)을 채택했습니다. 본 방침에는 살충제 사용시, 이를 부모/보호자와 교육구 직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년도 동안, 해충에 의한 심각한 질병그리고/또는 건물 구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충제에 노출될 경우 자녀나 본인(학교 직원) 건강 그리고/또는 행동이 지장있는 경우, 다음을 통지합니다:

- 승인 목록에 속한 살충제는 해당 학년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교육구 산하 모든 장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살충제 목록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십시오).
- 비승인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72시간 전에 통지합니다(예외: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교육구 승인 목록을 포함한 살충제 관련 추가 정보는 <http://www.cdpr.ca.gov> 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살충제가 사용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한다면, 아래 부분을 작성한 후 절취선 부분을 잘라서 학교 메인 오피스로 보내주시시오.

----- 절취선 부분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

학부모/보호자 통지 요청서

2015-2016

- 본인은 자녀의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합니다(예: 연례 살충제 사용 통지서에 추가로). 본인은 살충제 사용 전 적어도 72시간 전에, 해당 통지서가 자녀편으로 집으로 보내지거나, 교직원으로서 본인에게 제공된 것을 이해합니다. (예외: 비상시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은 자녀의 학교에서 살충제를 사용할 때마다 사전에 통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학부모 학생 안내서에 실린 연례 통지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학교에서 사용된 공인 살충제를 통지받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학교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_____ 교실 번호 _____

학교 명: _____

부모/보호자 성명 (정자로 기입하십시오):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Note to Site Administrator

File the original in the Main Office. If the above "I would like to be notified" box is checked, forward a copy of this notice via school mail to Pest Management Unit.

Maintenance and Operations Central 3 and Special Services
Attn. Pest Management Unit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 2015-2016

살충제	(1)		사용 방법	목표물 해충	USEPA	(2)		EPA REG. NO. or CA. REG. NO.
	유효성 성분	외형상 특성			독성 유형	레벨 지정	의견	
Advance Granular Ant Bait	아마벡틴 B1 0.011%	알갱이	실내 틈새와 구멍. 실외는 레벨에 따라 사용.	개미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370
Alpine Cockroach Gel Bait	Dinotefuran	젤	실내 틈새, 구멍과 빈 공간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507
Avert Dry Flowable Cockroach Bait (Formula 1)	아마벡틴 B1 0.05%	미립자	틈새와 구멍 미립자 미끼	바퀴벌레	3	주의	미끼 유인제.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294
Bora-Care Termiticide, Insecticide and Fungicide Concentrate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 40%	액체 현탁	해충으로 감염된 나무에 분무기로 뿌린다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1
Contrac Blox	브로모디알론 0.005%	고체 덩어리 미끼	먹이 서식지에만 사용하는 땅굴쥐 미끼	땅굴쥐	3	주의	먹이 서식지에 간혹 사용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12455-79
Demize EC	리날롤 37%, 파이프롤닐 부트오시드 40%	액체	분무기 사용	벼룩	1	위험	사용할 때마다 해충제 승인과 감독이 필요함. 사람이 없는 건물에만 사용할 수 있음. 차후 팀 회의에서 IPM 팀에 통지함.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2724-769-57076
Distance IGR	피리프로시펜 0.5%	알갱이	부분 또는 전지역	불개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1021-1728-59639
Drax Ant Kil Gel	붕산 5%	젤	실내와 실외 구멍 및 틈새. 설탕을 섞은 미끼	개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9444-131
Generation Mini-Block	디페타아론 0.0025%	고체 미끼 덩어리	미끼를 서식장소에만 사용	땅굴쥐	3	주의	견고한 미끼 통을 사용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7173-218
Gentrol IGR Concentrate	하이드로프로펜 9%	액체	틈과 구멍에 분무기로 뿌린다	바퀴벌레, 벼룩, 저장실 해충	2	경고	시설물에만 사용. 해충 성장 조정.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2724-351
M-Pede	지방산 포타슘염 49%	액체	분무기로 해충에게 직접 뿌린다	아프리카 꿀벌, 삼주벌레, 농작물 해충	2	경고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53219-6
MotherEarth 2% PY	Pyrethrin 2% (식물 재료 해충제)	에러솔	레벨에 따라 사용		3	주의	사용 후 식품을 다룰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499-520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 2015-2016

							따른다	
MotherEarth Exempt	Geraniol 6% Lemongrass Oil 0.5	에러솔	레벨에 따라 사용.	여러 해충들	3	주의	사용 후 식품을 다룰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면제
MotherEarth D	Diatomaceous Earth 100%	미립자	레벨에 따라 사용.	여러 해충들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509
Niban Granular Bait and Niban-FG	붕산-5%	미립자, 미세한 미립자	실내 및 실외 미끼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2
NiBor-D	Disodium Octaborate Tetrahydrate-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여러 종류의 해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8
PT 565 Plus XLO Formula 2	피레트린-0.5% 피페로닐 불옥시드-1% 엔-옥틸 비사이클로헥스틴 디카르복실산 1%	에러솔	레벨에 따라 사용.	벼룩, 각다귀, 모기, 벌, 진드기	3	주의	사용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출입이 가능하다. 사용 후 식품을 다룰 때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290
PT Wasp Freeze	페노트린 0.12%, d-트랜스 말레트린 0.129%	에러솔	실외용 분무기로 직접 말벌과 벌에 뿌린다	말벌, 벌	3	주의	사용하기 전에 수퍼바이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99-362
Recruit IV AG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지에만 사용	지하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719-454
Recruit IV (Sentricon)	Noviflumuron 0.5%	고체	미끼를 서식지에만 사용	지하 터마이트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719-453
Rozol Pocket Gopher Bait	Chlorphacinone.....0.005%	알갱이 미끼	땅다람쥐 서식지에만 사용한다	땅다람쥐	3	주의	학생들이 인근에 없을 때, 운동장과 조경지에 사용함.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7173-184
Suspend SC	델타메트린 4.75%	액체	분무기로 뿌린다	벼룩, 티크, 불개미	3	주의	실외에만 사용함. 벼룩, 티크와 불개미. 사용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입이 가능하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432-763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Approved Pesticide Product List - 2015-2016

Tim-Bor Professional	붕산염 98%	분말	건조하거나 젖은 상태로 사용	나무 파괴 생물체 및 곰팡이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4405-8
Wilco Ground Squirrel Bait	Diphacinone 0.005%	알갱이 미끼	미끼 서식지에만 놓는다.	땅굴 다람쥐	3	주의	곧 비가 올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매번 사용할 때 슈퍼바이저로부터 승인을 받음.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36029-20
ProFoam Platinum	황산염 인산수소, Sodium Lauroampho Acetate, Sodium Lauryl Sulfate.....60%	거품	거품을 내는 요소; 살충제가 아님	다양하게 사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Ca. Reg. 1051148-50001-AA
Summit Bti Briquets	Bacillus thuringiensis subspecies israelensis solids, spores and insecticidal toxins-10%	고체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6218-47
Mosquito Larvicide GB 1111	Aliphatic Petroleum Hydrocarbons- 98.7%	액체	수면에 사용한다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 사용시, 사용 지역에차단용 테이프를 치서 경고 사인을 붙이도록 한다. 본 제품 사용한 모든 경우를 IPM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인벤토리 관리 방법이 사용된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8329-72
Altosid Briquets	S-Methoprene- 8.62%	덩어리	물 위에 떠있는 유충	모기 유충	3	주의	본 제품은 물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곳 즉 폭풍 배관이나 저장 웅덩이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당 제품의 적용 PPE 법은 제품 레벨에 따른다	2724-375

MEMBERS OF THE BOARD

STEVEN ZIMMER, PRESIDENT
 MÓNICA GARCÍA
 DR. GEORGE J. McKENNA III
 MÓNICA RATLIFF
 REF RODRIGUEZ
 SCOTT SCHMERLSON
 DR. RICHARD A. VLADOVI

RAMON C. CORTINES
 Superintendent of Schools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STUDENT HEALTH AND HUMAN SERVICES

333 South Beaudry Avenue, 29th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17
 Telephone: (213) 241-3840
 Fax: (213) 241-3305

THELMA MELÉNDEZ DE SANTA ANA, PH.D.
 Chief Executive Officer, Educational Services

DEBRA DUARDO, MSW, ED.D.
 Executive Director



사생활 보호 업무 수행 통지서

본 통지서는 자녀에 대한 의료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공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귀하가 이런 정보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및 관련 계약 기관/학교들은 연방 법규에 의거하여, 의료 보험 이동성 및 책무성 법규(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를 준수하여 귀하의 보호된 건강 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PHI)를 기밀에 부쳐야 합니다. PHI에는 교육구가 자녀의 신원이 식별될 수도 있는 자녀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건강/의료 상태를 처음으로 작성했거나 취득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귀하의 서면 위임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는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된 경우에만 치료, 비용 지불, 의료 케어 운영등의 건강/의료 정보를 공개할 것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경우를 열거하지 않았지만, 다음 설명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구는 이런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약속 재확인 및 건강-관련 혜택 또는 서비스:** 귀하에게 시간 약속 재확인을 보내드리기 위해 PHI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기타 건강 케어 관련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드리기 위해서도 PH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치료:** 귀하에게 의료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또는 의사,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전문가와 같이 자녀의 케어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재학중 필요한 적절한 특수 교육을 추천할 목적으로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위해 PHI를 관련 교직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제공된 치료 비용을 받기 위해:** 자녀가 학교 또는 커뮤니티에서 받은 치료 및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청구비를 지급받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LAUSD는 메디칼 수혜 자격 학생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메디케어에 청구합니다.
- 건강 케어 운영:** 교육구는 학교에서 운영되는 보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귀하의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구의 질적 개선 멤버는 질적 개선 목적을 위해 케어 및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자녀의 건강 기록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교육구는 연방, 주 또는 시 법규가 요구하는 경우, 정부 직원 또는 법 집행 기관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정 또는 기타 법 절차상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PHI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이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 대한 사적 정보를 신고해야만 한다고 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공공 보건 활동 보고를 위해:** 특정 공공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 공무원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 사망 및 SARS와 수두와 같은 질병에 대한 일부 통계 정보에 대한 일반 정보를 공유합니다.
- 리서치 목적을 위해:** 의료 리서치 목적을 위해 PHI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교육구는 하지만, 자녀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PHI를 사용할 것입니다.
-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대중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교육구는 법 집행 기관, 응급요원이나 이런 위험을 중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PHI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금 모금:** 교육구의 서비스를 강화 및 확대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그랜트를 신청하거나 그리고/또는 기금 모금 기관에게 PHI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지는 않지만, 자녀의 신원이 식별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귀하의 PHI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LAUSD의 관행입니다.)

귀하의 권리

- 교육구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거나 사본을 취득할 권리 또는 분실되었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녀의 개별 정보를 정정할 권리. 다른 사람(귀하의 의사)이 이런 정보를 교육구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구는 그사람이 누구인지 귀하에게 알려서 이런 정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비용 지불 또는 건강 케어 운영 활동을 위해 귀하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할 권리. (교육구는 이런 요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합당한 대안책 또는 다른 장소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귀하와 의사소통해줄 것을 교육구에 요청할 권리.
- 귀하의 승인을 서면으로 언제든지 기각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부모가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교육구는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구가 2003년 4월 14일 이후 작성한 귀하의 건강 정보 공개 목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귀하의 공개를 허락했다.
 - 이런 공개는 치료, 비용 지불 또는 건강 케어 운영을 위한 것이다; 또는
 - 달리 법규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질문이 있다면 로전화 Margarita Bobe (213) 241-0558.

고소 절차

귀하의 사생활 보호권이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면, 서면 고소장을 다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Student Health and Human Services
 333 South Beaudry Avenue, 29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Attn: Margarita Bobe

고소 절차 대안책:

Privacy Complaints
 P.O. Box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7500 Security Boulevard
 Baltimore, Maryland
 1-800-633-4227



학교 분위기 권리장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는 모든 학생의 총괄적인 복지와 안녕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SD 학생, 직원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시행세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따라서 긍정적 행동 중재를 토대로 한 훈육 문화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며, 학습지도 시간에 방해하는 처벌적 훈육 접근법을 멀리 하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도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대학 및 커리어 선택의 기회를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건설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릴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안전, 티칭과 러닝, 대인관계에 중점을 둔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며, 학생의 배움과 안녕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 하에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SWPBIS)**
정학 감소, 출석 증가, 시험 성적 향상 그리고 교직원 지원을 추구하는 중재.

- **정학에 대한 대안 및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정학 대안 전략은 정학처분을 내리기 전, 일관성있고 연령에-적합한 방법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것이며, 다만,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15(c) 하에 요구되는 제한적 위반행위는 제외된다. 2013년부터, 어떤 학생도 “고의적 반항” (48900(k) 위반행위로 정학 또는 퇴학처분 받지 않을 것이다.

- **학교 훈육 및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데이터는 볼 수 있음**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차원의 월별 훈육 데이터를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이 포함된다: 정학, 비자발적 전학, 기회 전학, 퇴학,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이런 데이터는 개별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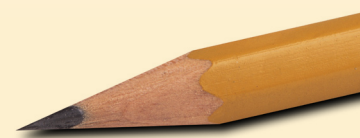
-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을 통해 학생의 대인 갈등을 해소한다** 2015-2016 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들은 전통적인 학교 훈육의 대안으로써 RJ를 개발 및시행할 것이며, 해당될 경우,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전략과 일치하는 중재로써 적용될 것이다.

- **교육구 SWPBIS 특별부서 SWPBIS**

데스크포스 구성원들은 교사, 학생, 행정관 그리고 교육 서비스 센터에서 온 학부모 대표들이며, 더불어 SWPBIS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커뮤니티 기관의 멤버들로부터 추천사항을 받는다.

- **교정에서의 학교 경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행세칙** 학생들은 법 집행기관, 보호감찰, 및 미성년 및 형법 사법제도를, 가급적 최대한 범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제도** 학생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들은 만약 SWPBIS가 요청 후, 60일 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지고 있다.



학교 분위기 권리장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는 모든 학생의 총괄적 복지와 안녕을 지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SD 학생, 직원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시행세칙을 중요히 생각하며, 따라서 긍정적 행동 중재를 토대로 한 훈육 문화를 개발하고 시행할 것이며, 학습지도 시간을 방해하는 처벌적 훈육 접근법을 멀리하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도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대학 및 커리어 선택의 기회를 높여서 우리 학생들이 건설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안전, 티칭과 러닝, 대인관계에 중점을 둔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며, 학생의 배움과 안녕을 장려하는 제도적 환경 하에 학교를 다닐 것입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다음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SWPBIS)**

LAUSD는 훈육 기본 방침에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과 함께 정학처분의 대안으로 시행할 것이다. 적절한 예방 및 중재 접근법은 책무와 화합을 가져다 주며, 이는 훈육이 주는 충격 그리고 이로 인한 상처 치료를 이해하게 된다. 이를 공동 결정 과정을 통해 시행한다.

- **정학에 대한 대안 및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정학 대안 전략은 정학처분을 내리기 전, 일관성있고 연령에-적합한 방법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될 것이며, 다만,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15(c) 하에 요구되는 제한적 위반행위는 제외된다. 2013년부터, 어떤 학생도 “고의적 반항” (48900(k) 위반행위로 정학 또는 퇴학처분 받지 않을 것이다.

- **학교 훈육 및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데이터는 볼 수 있음**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차원의 월별 훈육 데이터를 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이 포함된다: 정학, 비자발적 전학, 기회 전학, 퇴학, 학교-차원의 체포 및 위반장. 이런 데이터는 개별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

-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을 통해 학생의 대인 갈등을 해소한다**

2015-2016 학년도부터, 모든 학교들은 전통적인 학교 훈육의 대안으로써 RJ를 개발 및시행할 것이며, 해당될 경우, 복구 전략 트레이닝을 받은 직원 그리고 개입된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한 하에, 발생된 손상을 식별하고 화합을 복구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서 학교 훈육 사건을 해결한다. 이런 복구 절차를 통해, 해당 그룹은 손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유해를 예방하기 위해 뿌리가 되는 원인을 찾아가는 합의안을 작성한다.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은 모든 학교 훈육 사건에 대해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SWPBIS) 방침과 일치하는 중재로서 적용될 수 있다. 단지, 캘리포니아 교육법 48915항 또는 안전이 위험에 처해있을 때, 요구되는 퇴학 권고는 제외된다.

- **교육구 SWPBIS 특별부서**

SWPBIS 테스크포스 구성원들은 교사, 학생, 행정관 그리고 교육 서비스 센터에서 온 학부모 대표들이며, 더불어 커뮤니티 기관의 멤버들로부터 추천사항을 받는다. 더불어 학생, 직원 및 학부모/보호자들과 함께 교육구-차원의 긍정적 문화 및 복구적 정의 (RJ) 접근법 시행에 대한 추천사항을 제공할 것이다.

- **교정에서의 학교 경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시행세칙**

학생들은 법 집행기관, 보호감찰, 및 미성년 및 형법 사법제도를, 가급적 최대한 범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분위기에 대한 권리가 있다.

- **학교-전체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제도**

학생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들은 만약 SWPBIS가 요청 후, 60 일 내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정식 고소장을 접수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지고 있다.

